

|                      |
|----------------------|
| 발 간 등 록 번 호          |
| 11-1270000-000500-01 |



# 日 本 刑 法

2007. 12



법 무 부



## 발 간 사

법무부는 지난 6월 ‘형사법 개정 특별 분과위원회’를 출범하여 형법 총칙의 범죄론·형벌론 분야에서부터 형법 각칙 및 각종 형사특별법 분야에 이르기까지 불합리한 규정들을 개선하고, 미처 규율하지 못했던 신종 범죄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형사실체법 정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대한 규모의 형사실체법 정비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입법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일본 형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전문을 번역하고 일본 형법의 연혁 및 개정 동향을 정리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형법은 1907년 제정된 이래 최근까지 20차례에 걸쳐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은 조문을 삭제·수정 또는 신설하는 형식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4년에는 법정형이 대대적으로 정비되었으며, 올해에도 교통사범에 대한 적정한 과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또한, 1926년에 제정된 일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도 6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일본 형법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소개한 이 자료집이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 형사실체법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일본 형사법 제도 연구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자료의 번역 및 발간을 위해 애쓴 주일대사관 법무협력관 전강진 검사, 일본 중앙대·동경대·경응대에서 유학 중인 양중진·한정화·김재화 검사 및 검찰국 형사법제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07. 12.

법무부 검찰국장

문성우



## 목 차

### 제1장 일본 형법의 연혁 및 개정 동향

|                            |   |
|----------------------------|---|
| 1. 구형법(舊刑法)의 제정 .....      | 3 |
| 2. 현행 형법의 제정 및 개정 경과 ..... | 3 |
| 3. 개정형법초안 관련 동향 .....      | 8 |

### 제2장 일본 형법

#### 제1편 총칙

|                                       |    |
|---------------------------------------|----|
| 1. 통칙(제1조-제8조) .....                  | 16 |
| 2. 형(제9조-제21조) .....                  | 22 |
| 3. 기간 계산(제22조-제24조) .....             | 26 |
| 4. 형의 집행유예(제25조-제27조) .....           | 27 |
| 5. 가석방(제28조-제30조) .....               | 29 |
| 6. 형의 시효 및 형의 소멸 (제31조-제34조의 2) ..... | 30 |
| 7. 범죄의 불성립 및 형의 감면 (제35조-제42조) .....  | 32 |
| 8. 미수죄 (제43조·제44조) .....              | 34 |
| 9. 병합죄 (경합범, 제45조-제55조) .....         | 35 |
| 10. 누범 (제56조-제59조) .....              | 38 |
| 11. 공범 (제60조-제65조) .....              | 39 |
| 12. 작량감경 (제66조·제67조) .....            | 40 |
| 13. 가중감경의 방법 (제68조-제72조) .....        | 40 |

## 제2편 죄

|                                                           |    |
|-----------------------------------------------------------|----|
| 1. 삭제(제73조-제76조) .....                                    | 42 |
| 2. 내란에 관한 죄 (제77조-제80조) .....                             | 42 |
| 3. 외환에 관한 죄 (제81조-제89조) .....                             | 43 |
| 4. 국교에 관한 죄 (제90조-제94조) .....                             | 45 |
| 5.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죄 (제95조-제96조의 3) .....                     | 46 |
| 6. 도주의 죄 (제97조-제102조) .....                               | 47 |
| 7. 범인은닉 및 증거인멸의 죄 (제103조-제105조의 2) ....                   | 48 |
| 8. 소란의 죄 (제106조 · 제107조) .....                            | 49 |
| 9. 방화 및 실화의 죄 (제108조-제118조) .....                         | 50 |
| 10. 출수 및 수리에 관한 죄 (제119조-제123조) .....                     | 54 |
| 11. 왕래를 방해한 죄 (제124조-제129조) .....                         | 55 |
| 12. 주거를 침해한 죄 (제130조-제132조) .....                         | 57 |
| 13. 비밀을 침해한 죄 (제133조-135조) .....                          | 58 |
| 14. 아편에 관한 죄 (제136조-제141조) .....                          | 59 |
| 15. 음료수에 관한 죄 (제142조-제147조) .....                         | 60 |
| 16. 통화위조의 죄 (제148조-제153조) .....                           | 61 |
| 17. 문서위조의 죄 (제154조-제161조의 2) .....                        | 62 |
| 18. 유가증권위조의 죄 (제162조 · 제163조) .....                       | 66 |
| 18-2. 지불용 카드 · 전자적 기록에 관한 죄 (제163조의 2-<br>제163조의 5) ..... | 67 |
| 19. 인장위조의 죄 (제164조-제168조) .....                           | 68 |
| 20. 위증의 죄 (제169조-제171조) .....                             | 70 |
| 21. 허위고소의 죄 (제172조 · 제173조) .....                         | 71 |
| 22. 음란, 간음 및 중혼의 죄 (제174조-제184조) .....                    | 71 |
| 23. 도박 및 복권에 관한 죄(제185조-제187조) .....                      | 75 |
| 24. 예배소 및 분묘에 관한 죄 (제188조-제192조) .....                    | 76 |

|                                         |     |
|-----------------------------------------|-----|
| 25. 독직의 죄 (제193조-제198조) .....           | 77  |
| 26. 살인의 죄 (제199조-제203조) .....           | 80  |
| 27. 상해의 죄 (제204조-제208조의 3) .....        | 81  |
| 28. 과실상해의 죄 (제209조-제211조) .....         | 84  |
| 29. 낙태의 죄 (제212조-제216조) .....           | 85  |
| 30. 유기의 죄 (제217조-제219조) .....           | 86  |
| 31. 체포 및 감금의 죄 (제220조 · 제221조) .....    | 87  |
| 32. 협박의 죄 (제222조 · 제223조) .....         | 88  |
| 33. 약취, 유괴 및 인신매매의 죄 (제224조-제229조) ..   | 89  |
| 34. 명예에 대한 죄 (제230조-제232조) .....        | 93  |
| 35. 신용 및 업무에 대한 죄 (제233조-제234조의 2) .... | 94  |
| 36. 절도 및 강도의 죄 (제235조-제245조) .....      | 95  |
| 37. 사기 및 공갈의 죄 (제246조-제251조) .....      | 98  |
| 38. 횡령의 죄 (제252조-제255조) .....           | 100 |
| 39. 도품 등에 관한 죄 (제256조 · 제257조) .....    | 101 |
| 40. 횡기 및 은닉의 죄 (제258조-제264조) .....      | 102 |

### 제3장

|                       |     |
|-----------------------|-----|
| 일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109 |
|-----------------------|-----|

### 부 록

|                     |     |
|---------------------|-----|
| 刑法 .....            | 117 |
|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 | 208 |



제 1 장

# 일본 형법의 연혁 및 개정 동향



## 1. 구형법(舊刑法)의 제정

일본에서 근대적 의미의 형법은 明治(메이지) 13(1880)년 서양의 근대적인 형법을 계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위 형법은 메이지 정부가 초청한 프랑스인 보아소나드(Gustave Emile Boissonade de Fontarabie)의 초안을 토대로 작성되어 프랑스 형법 특히, 나폴레옹 형법전으로부터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위 일본 형법은 계몽주의적인 시민적 자유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한 법전으로, 위 법전에서는 총칙과 각칙을 구분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였으며, 범죄를 중죄, 경죄 및 위경죄(違警罪)로 3분함과 동시에 형벌의 종류로 사형, 도형(徒刑), 유형(流刑), 징역, 금옥(禁獄, 중죄의 형), 금고, 벌금(경죄의 형), 구류, 과료(違警罪의 형)를 포함한 주형과 박탈공권(剝奪公權), 정지공권(停止公權), 금치산, 감시, 벌금, 몰수의 부가형으로 정하였으며, 현재 이를 구형법이라고 부르고 있다.<sup>1)</sup>

## 2. 현행 형법의 제정 및 개정 경과

그 후 독일 형법의 영향 아래 1907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전의 특색은 범죄의 유형이 구형법에 비해 포괄적이고, 법정형의 폭이 넓다는 것이다.

1) 오오즈카 히토시(大塚仁), 형법개설(총론, 제3판 보정판), 유비각(有斐閣), 2005.

예를 들어 구형법에서는 살인행위에 대해 모살(謀殺)죄, 고살(故殺)죄, 독살(毒殺)죄, 참각살(慘刻殺)죄, 편리살(便利殺)죄, 유도살(誘導殺)죄, 오살(誤殺)죄 등으로 구분한 후 그에 대해 사형 혹은 무기도형(無期徒刑)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위 형법에서는 이를 보통살인죄 1개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법정형으로 '사형,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였다.

그 밖에 중죄, 경죄, 위경죄의 구별을 폐지하였고, 형벌의 종류도 간소화하였는데 이는 19세기 말에 유행하였던 자유주의를 수정하려고 하는 사상적 동향에 근거하여 당시의 형법이론과 형사정책을 도입한 것이다.<sup>2)</sup>

현행 형법은 1908년에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20차례 걸쳐 개정되었는데, 1921년의 최초 개정에서는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변경하였으며(제253조, **제1차 개정**), 1941년에는 노역장 유치와 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제18조 제1항, 제3항, 제19조), 추징의 범위를 넓혔으며(제19조의 2), 강제집행 부정면탈죄(제96조의 2), 경매입찰 방해죄(제96조의 3 제1항), 담합죄(제96조의 3 제2항), 업무상실화죄(제117조의 2) 등을 신설하였고, 수뢰죄의 구성요건을 세분화하여 법정형을 높였다.(제197조, 제197조의 2, 제197조의 3, 제197조의 5, 제198조, **제2차 개정**)

2) 오오츠카 히토시(大塚仁), 전제서

1947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제정된 일본헌법의 정신 특히, 평등주의와 인권존중주의 등을 근거로 형법전을 전반에 걸쳐 개정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황실에 대한 죄(제2편 제1장 제73조~제76조, 제131조), 안녕질서에 대한 죄(제83조~제86조, 제89조), 외국의 원수 및 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죄(제90조, 제91조) 및 처의 간통죄(제183조) 등이 삭제되었고,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제193조), 폭행죄(제208조), 협박죄(제222조 제1항)의 법정형이 가중되었으며, 형의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었고(제25조), 전과말소제도(제34조의 2)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증명에 관한 규정(제230조의 2)이 신설되었다. (제3차 개정)

1953년에는 형의 집행유예 후에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의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조건이 더욱 완화(제25조, 제26조, 제26조의 2, 3)되었으며, 첫 번째 집행유예를 받은 후 다시 두 번째로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 대해 보호관찰을 붙일 수 있는 규정(제25조의 2)이 신설되었고(제4차 개정), 1954년에는 처음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보호관찰을 붙일 수 있게 되었으며(제25조의 2), 국외에 있는 일본 항공기 내의 범죄에 대해 선박과 동일한 취급을 하도록 개정하였다.(제1조 제2항, 제5차 개정)

1958년에는 증인위박(證人威迫)죄(제105조의 2), 알선수뢰·증뢰죄(제197조의 4), 흥기준비집합·결집죄(제208조의 3) 등이 신설되었고, 윤간죄가 비친고죄로 되었으며(제180조 제2항, 제6차 개정), 1960년에는 부동산

산침탈죄(제235조의 2), 경계훼손죄의 규정이 신설되었고(제262조의 2, **제7차 개정**), 1964년에는 몸값요구유괴죄(제225조의 2)와 이에 대한 예비죄(제228조의 3)가 신설되는 등 약취 및 유인에 관한 죄(제33장)가 전반적으로 정비되었다.(**제8차 개정**)

1968년에는 병합죄(경합범)의 요건이 수정(제45조)되었으며, 격증하는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의 상한을 '3년 이하의 금고'로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가중하였고(제211조 제1항, **제9차 개정**), 1980년에는 각각의 수뢰죄에 대한 법정형이 가중되었으며(제197조, 제197조의 2, 제197조의 4, 제198조, **제10차 개정**), 1987년에는 컴퓨터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적 기록'의 정의규정(제7조의 2), 전자적기록부정작출죄, 부정전자적기록공용죄(제161조의 2), 전자계산기업무방해죄(제234조의 2), 전자계산기사용사기죄(제246조의 2)의 규정이 신설되었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제181조 제1항) 등의 보호객체에 전자적 기록이 추가되었으며, 전후 화폐가치의 급격한 하락과 경제사정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형법이 정하는 벌금, 과료의 액도 수정하였다.(제15조, 제17조, **제11차 개정**)

1991년에는 각칙상의 죄에 대한 벌금을 가중함과 동시에 벌금을 1만엔 이상(제15조), 과료를 천엔 이상 1만엔 미만(제18조)으로 조정하였고(**제12차 개정**), 1995년에는 법령의 표기방식을 종래의 가타가나(カタカナ)식 문어체에서 히라가나(ひらがな)식 구어체로 변경하였으며, 농아자의 책임능력에 관한 규정(제40조) 및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제200

조)을 삭제하였다.(제13차 개정)

2001년에는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첫 번째 개정에서는 지불용 카드에 관한 처벌규정이 증설되어, '지불용 카드 전자적 기록에 관한 죄'의 장이 신설되었으며(제18장의 2 제163조의 2~제163조의 5, 제14차 개정), 두 번째 개정에서는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규정이 신설되었고(제208조의 2), 흥기준비집합·결집죄(제208조의 3)의 조문 위치가 변경되었다.(제15차 개정)

2003년에도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첫 번째 개정에서는 '국민 이외의 자의 국외범'이라는 소위 소극적 속인주의의 규정이 설치되었고(제3조의 2, 제16차 개정), 두 번째 개정에서는 같은 해에 공포된 중재법에 중재인에 관한 증수죄의 규정이 포함되게 되어 형법의 관련 규정에서 중재인을 삭제하였다.(제197조, 제197조의 2, 3, 제17차 개정)

2004년에는 법정형에 대하여 중대한 개정이 있었는데, 총칙에서 ① 유기의 징역, 금고의 법정형을 1월 이상 20년 이하로 하였고(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② 사형 혹은 무기의 징역이나 금고를 감경하여 유기의 징역이나 금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를 30년으로 하였으며(제14조 제1항), ③ 유기의 징역 및 금고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그 형을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였고(제14조 제2항), 개별적인 범죄유형에 대하여는 ① 강제음란(제176조), 준강제음란(제178조 제1항), 강간(제177조), 준강제음란·준강간(제178조), 강간치사상(제181조 제2항), 살인(제199조), 상해(제204조), 상해치사(제205조), 위험운전치상(제208조의 2 제1항)

등의 죄에 대해 법정형을 가중하였으며, ② 집단강간죄(제178조의 2), 집단강간등치사상죄(제181조 제2항, 제3항)를 신설하였고, ③ 강도치상죄(제240조)의 법정형을 경감하였다.(제18차 개정)

2005년에는 체포 및 감금죄(제220조)의 법정형을 가중하였고, 인신매매죄(제226조의 2), 피약취자등소재국외이송죄(제226조의 3)를 신설하였고(제19차 개정),<sup>3)</sup> 2007년에는 자동차운전에 의한 사상사고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그 실정에 맞는 적절한 과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치사상죄(제211조 제2항)'를 신설하여 종래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보다 벌칙을 강화함과 동시에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를 종래의 '4륜 이상의 자동차'에서 '자동차'로 개정하였다.(제208조의 2, 제20차 개정)<sup>4)</sup>

### 3. 개정형법초안 관련 동향

현행 형법 시행 이후, 1920~1930년대의 시대적 흐름인 관료적 국가주의와 시민적 사회방위주의를 반영한 '改正刑法仮案'이 공표되는 등 전면적 개정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공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실제로 개정되지는 못하였다.

---

3) 타테이시 니로쿠(立石二六), 형법총론(제2판), 성문당(成文堂). 2006.

4) 법률시보, 제59권 8호, '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대하여'. 2007년 8월호.

그 후,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성립된 헌법의 정신을 반영한 형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74년 '改正刑法草案' 작성되었는데, 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모두에 명시하고, 총칙에서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불능범, 간접정범, 공모공동정범 등을 규정하여 이에 대한 조문적 근거를 부여하고, 전체적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현대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등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부합하려고 한 점, ② 위법성의 인식을 결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않기로 하고, 결과적가중범의 처벌에는 결과발생의 예견가능성을 필요로 하며, 형은 범죄자의 책임에 따라 양정해야 한다는 점 등 책임주의를 철저히 하려고 한 점, ③ 징역, 금고의 하한을 3월, 구류의 상한을 90일(병과의 경우에는 120일)로 하고,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기본원칙, 형의 적용의 일반기준을 표시하며, 상습누범에 상대적 부정기형을 규정하고, 보안처분으로서 치료처분 및 금절처분을 규정하는 등 형사정책적으로 새로운 조치를 고려한 점, ④ 사전(私戰), 집단반항, 소동예비, 피보호자의 간음, 기업비밀의 누설, 자동차등의 불법사용, 자동설비의 부정이용, 무임승차, 준공갈 등 현행 형법에 없는 범죄를 신설한 점, ⑤ 존속살인, 존속상해치사, 존속유기, 존속체포감금죄 등을 삭제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요청에 따른 범죄유형의 정비를 배려한 점 등이 그 특징이다.

그러나, 위 초안에 대하여는 재야법조, 정신의학자 등을 시작으로 각 방면에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이 쏟아져 법무성은 이를 고려한 대안을 공표하기도 하였지만 현재까지 입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5년 형법 일부 개정에 의해 형법전의 구어화가 행해진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20차에 걸쳐 일부 조문별로 개정이 이루어졌다.<sup>5)</sup>

---

5) 타테이시 니로쿠(立石二六) 전게서 39~40면

## 제 2장

# 일본 형법



## 형 법

[명치 40(1907년) 4월 24일 법률 제45호] 공포,

[명치 41(1908년) 10월 1일] 시행

개정 대정 10(1921년)-법 77,  
소화 16(1941년)-법 61,  
소화 22(1947년)-법 124,  
소화 28(1953년)-법 195,  
소화 29(1954년)-법 57,  
소화 33(1958년)-법 107,  
소화 35(1960년)-법 83,  
소화 39(1964년)-법 124,  
소화 43(1968년)-법 61,  
소화 55(1980년)-법 30,  
소화 62(1987년)-법 52,  
평성 3(1991년)-법 31,  
평성 7(1995년)-법 91,  
평성 13(2001년)-법 97 · 법 138 · 법 153,  
평성 15(2003년)-법 122 · 법 183,  
평성 16(2004년)-법 158,  
평성 17(2005년)-법 50 · 법 66,  
평성 18(2006년)-법 36,  
평성 19(2007년)-법 54

## 제1편 총칙

- 제1장 통칙(제1조-제8조)
- 제2장 형(제9조-제21조)
- 제3장 기간 계산(제22조-제24조)
- 제4장 형의 집행유예(제25조-제27조)
- 제5장 가석방(제28조-제30조)
- 제6장 형의시효 및 형의소멸(제31조-제34조의 2)
- 제7장 범죄의 불성립 및 형의 감면(제35조-제42조)
- 제8장 미수죄(제43조 · 제44조)
- 제9장 병합죄(제45조-제55조)
- 제10장 누범(제56조-제59조)
- 제11장 공범(제60조-제65조)
- 제12장 작량감경(제66조 · 제67조)
- 제13장 가중감경의 방법(제68조-제72조)

## 제2편 죄

- 제1장 삭제(제73조-제76조)
- 제2장 내란에 관한 죄(제77조-제80조)
- 제3장 외환에 관한 죄(제81조-제89조)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제90조-제94조)
- 제5장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죄(제95조-제96조의 3)
- 제6장 도주의 죄(제97조-제102조)
- 제7장 범인은닉 및 증거인멸의 죄(제103조-제105조의 2)
- 제8장 소란의 죄(제106조 · 제107조)
- 제9장 방화 및 실화의 죄(제108조-제118조)

제10장 출수 및 수리에 관한 죄(제119조-제123조)  
제11장 왕래를 방해한 죄(제124조-제129조)  
제12장 주거를 침해한 죄(제130조-제132조)  
제13장 비밀을 침해한 죄(제133조-135조)  
제14장 아편에 관한 죄(제136조-제141조)  
제15장 음료수에 관한 죄(제142조-제147조)  
제16장 통화위조의 죄(제148조-제153조)  
제17장 문서위조의 죄(제154조-제161조의 2)  
제18장 유가증권위조의 죄(제162조·제163조)  
제18장의 2 지불용 카드·전자기록에 관한 죄(제163조의 2-제163조의 5)  
제19장 인장위조의 죄(제164조-제168조)  
제20장 위증의 죄(제169조-제171조)  
제21장 허위고소의 죄(제172조·제173조)  
제22장 음란, 간음 및 중혼의 죄(제174조-제184조)  
제23장 도박 및 복권에 관한 죄(제185조-제187조)  
제24장 예배소 및 분묘에 관한 죄(제188조-제192조)  
제25장 독직의 죄(제193조-제198조)  
제26장 살인의 죄(제199조-제203조)  
제27장 상해의 죄(제204조-제208조의 3)  
제28장 과실 상해의 죄(제209조-제211조)  
제29장 낙태의 죄(제212조-제216조)  
제30장 유기의 죄(제217조-제219조)  
제31장 체포 및 감금의 죄(제220조·제221조)  
제32장 협박의 죄(제222조·제223조)  
제33장 약취, 유괴 및 인신매매의 죄(제224조-제229조)  
제34장 명예에 대한 죄(제230조-제232조)

제35장 신용 및 업무에 대한 죄(제233조-제234조의 2)  
제36장 절도 및 강도의 죄(제235조-제245조)  
제37장 사기 및 공갈의 죄(제246조-제251조)  
제38장 횡령의 죄(제252조-제255조)  
제39장 도품 등에 관한 죄(제256조 · 제257조)  
제40장 횡기 및 은닉의 죄(제258조-제264조)

## 제 1 편 총 칙

### 제1장 통칙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 (국내법)

**제1조** ① 이 법률은 일본국내에서 죄를 범한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② 일본국외에 있는 일본선박 또는 일본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소22(1947년) 법124 본조개정, 소29(1954년) 법57 제2항 개정]

#### (모든 자의 국외법)

**제2조** 이 법률은 일본국외에서 다음에 정한 죄를 범한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1. 삭제
2. 제77조 내지 제79조(내란, 예비 및 음모, 내란 등 방조)의 죄

3. 제81조(외환유치), 제82조(외환원조), 제87조(미수죄) 및 제88조(예비 및 음모)의 죄
4. 제148조(통화위조 및 행사 등)의 죄 및 그 미수죄
5. 제154조(조서〈詔書〉위조 등), 제155조(공문서위조 등), 제157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제158조(위조공문서행사 등) 및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할 전자적 기록에 관한 제161조의2(전자적 기록 부정작출 및 공용)의 죄
6. 제162조(유가증권위조 등) 및 제163조(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죄
7. 제163조의 2부터 제163조의 5(지불용 카드, 전자적기록 부정작성 및 동행사)의 죄
8. 제164조 내지 제166조(옥새 위조 및 부정사용 등, 공인 위조 및 부정사용 등, 공기호 위조 및 부정사용 등)의 죄 및 제164조 제2항, 제165조 제2항 및 제166조 제2항의 죄의 미수죄

[소22(1947년) 법124, 소62(1987년) 법52, 평13(2001년) 법97 본조 개정]

### (국민의 국외범)

**제3조** 이 법률은 일본국외에서 다음에 정한 죄를 범한 일본국민에게 적용한다.

1. 제108조(현주건조물방화) 및 제109조 제1항(비현주건조물 등 방화)의 죄, 이들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죄 및 이들 죄의 미수죄
2. 제119조(현주건조물 등 침해)의 죄
3. 제159조 내지 제161조(사문서 위조 등, 허위진단서 등 작성, 위조사

- 문서 등 행사) 및 전조 제5호에 규정하는 전자적 기록 이외의 전자적 기록에 관한 제161조의2의 죄
4. 제167조(사인위조 및 부정사용 등)의 죄 및 동조 제2항의 죄의 미수죄
  5. 제176조 내지 제179조(강제추행, 강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집단 강간 등, 미수죄), 제181조(강제추행 등 치사상) 및 제184조(중혼)의 죄
  6. 제199조(살인)의 죄 및 그 미수죄
  7. 제204조(상해) 및 제205조(상해치사)의 죄
  8. 제214조 내지 제216조(업무상낙태 및 동 치사상, 부동산의 낙태, 부동산의 낙태치사상)의 죄
  9. 제218조(보호책임자유기 등)의 죄 및 동조의 죄에 관한 제219조(유기 등 치사상)의 죄
  10. 제220조(체포 및 감금) 및 제221조(체포 등 치사상)의 죄
  11. 제224조 내지 제228조(미성년자 약취 및 유괴, 영리목적 등 약취 및 유괴, 몸값 목적 약취 등, 국외 이송 목적 약취 및 유괴, 인신매매, 피약취자 등 국외이송, 수수〈授受〉 등, 미수죄)의 죄
  12. 제230조(명예훼손)의 죄
  13. 제235조 내지 제236조(절도, 부동산침탈, 강도), 제238조 내지 제241조(사후강도, 혼취〈昏醉〉강도, 강도치사상, 강도강간 및 동 치사) 및 제243조(미수죄)의 죄
  14. 제246조 내지 제250조(사기, 전자계산기사용사기, 배임, 준사기, 공갈, 미수죄)의 죄
  15. 제253조(업무상횡령)의 죄

16. 제256조 제2항(도품 양수 등)의 죄

[소22(1947년) 법124 제1항 개정· 제2항 삭제, 소35(1960년) 법83, 소62 (1987년) 법52, 평16(2004년) 법156, 평17(2005년) 법66 본조 개정]

### (국민 이외의 자의 국외범)

**제3조의2** 이 법률은 일본 외에서 일본국민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죄를 범한 일본국민 이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제176조 내지 제179조(강제추행, 강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집단 강간 등, 미수죄) 및 제181조(강제추행 등 치사상)의 죄
  2. 제199조(살인)의 죄 및 그 미수죄
  3. 제204조(상해) 및 제205조(상해치사)의 죄
  4. 제220조(체포 및 감금) 및 제221조(체포 등 치사상)의 죄
  5. 제224조 내지 제228조(미성년자 약취 및 유괴, 영리목적 등 약취 및 유괴, 몸값 목적약취 등, 국외이송목적약취 등, 인신매매, 피약취자 국외이송, 수수〈授受〉 등, 미수죄)의 죄
  6. 제236조(강도) 및 제238조 내지 제241조(사후강도, 혼취〈昏醉〉강도, 강도치사상, 강도강간 및 동 치사)의 죄 및 이러한 죄의 미수죄
- [평15(2003년) 법122 본조 추가, 평16(2004년) 법156, 평17(2005년) 법 66 본조 개정]

### (공무원의 국외범)

**제4조** 이 법률은 일본국외에서 다음에 정한 죄를 범한 일본국의 공무원

에게 적용한다.

1. 제101조(간수자 등에 의한 도주원조)의 죄 및 그 미수죄
2. 제156조(허위공문서작성 등)의 죄
3. 제193조(공무원직권남용), 제195조 제2항(특별공무원 폭행·능욕) 및 제197조 내지 제197조의4(수뢰, 수탁수뢰 및 사전수뢰, 제3자뇌물 공여, 가중수뢰 및 사후수뢰, 알선수뢰)의 죄 및 제195조 제2항의 죄에 관한 제196조(특별공무원직권남용 등 치사상)의 죄

[소16(1941년) 법61, 소22(1947년) 법124, 소33(1958년) 법107 본조 개정]

### (조약에 의한 국외범)

**제4조의2** 제2조 내지 전조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은 일본국외에서 제2편의 죄로서, 조약에 의하여 일본국외에서 범한 때에 별하여야 할 것으로 되어 있는 죄를 범한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소62(1987년) 법52 본조 추가]

### (외국판결의 효력)

**제5조** 외국에서 확정재판을 받은 자라도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여도 무방하다. 단, 범인이 이미 외국에서 선고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때에는 형의 집행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소22(1947년) 법124 본조 개정]

### (형의 변경)

**제6조** 범죄 후의 법률에 의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중 경한 것에 의한다.

### (정의)

**제7조** ① 이 법률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의원, 위원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이 법률에서 「공무소」라 함은 관공서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곳을 말한다.

**제7조의2** 이 법률에서 「전자적 기록」이라 함은 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소62(1987년) 법52 본조 추가]

### (다른 법령의 죄에 대한 적용)

**제8조** 이 편은 다른 법령의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 장 형

### (형의 종류)

**제9조** 사형, 징역, 금고, 벌금, 구류 및 과료를 주형으로 하고, 몰수를 부가형으로 한다.

### (형의 경중)

**제10조** ① 주형의 경중은 전조에 규정한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형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의 2배를 초과하는 때에도 금고를 중한 형으로 한다.

② 동종의 형은 장기가 긴 것 또는 다액이 많은 것을 중한 형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할 때에는 단기가 긴 것 또는 소액이 많은 것을 중한 형으로 한다.

③ 2개 이상의 사형, 장기 또는 다액 및 단기 또는 소액이 동일한 동종의 형은 범정에 의하여 그 경중을 정한다.

### (사형)

**제11조** ① 사형은 형사시설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②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시설에 구치한다.

[평17(2005년) 법50 본조 개정]

### (징역)

**제12조** ① 징역은 무기 및 유기로 하고, 유기징역은 1월 이상 20년 이하

로 한다.

② 징역은 형사시설에 구치하여 소정의 작업을 하게 한다.

[평16(2004년) 법156 제1항, 평17(2005년) 법50 제2항 개정]

### (금고)

**제13조** ① 금고는 무기 및 유기로 하고, 유기금고는 1월 이상 20년 이하로 한다.

② 금고는 형사시설에 구치한다.

[평16(2004년) 법156 제1항, 평17(2005년) 법50 제2항 개정]

### (유기징역 및 금고의 가감의 한도)

**제14조**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금고를 유기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를 30년으로 한다.

② 유기징역 또는 금고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30년까지 올릴 수 있고, 이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1월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

[평16(2004년) 법156 본조 개정]

### (벌금)

**제15조** 벌금은 1만엔 이상으로 한다. 단, 이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1만엔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

[평3(1991년) 법31 본조 개정]

### (구류)

**제16조**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하고, 형사시설에 구치한다.

[평17(2005년) 법50 본조 개정]

### (과료)

**제17조** 과료는 천엔 이상 1만엔 미만으로 한다.

[평3(1991년) 법31 본조 개정]

### (노역장유치)

**제18조** ① 벌금을 완납 할 수 없는 자는 1일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② 과료를 완납 할 수 없는 자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③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 또는 벌금과 과료를 병과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과료와 과료를 병과하는 경우의 유치의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할 수 없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⑤ 벌금에 관하여는 재판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 과료에 관하여는 재판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는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유치의 집행을 할 수 없다.

⑥ 벌금 또는 과료의 일부를 납부한 자의 유치기간은 그 잔액을 유치 1일의 비율에 상당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그 일수에 1일 미만의 단수가 생긴 경우에는 이를 1일로 한다)으로 한다.

[소16(1941년) 법61 제1항·제3항 개정, 평18(2006년) 법36 본조 개정]

### (몰수)

**제19조** ① 다음에 정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를 조성한 물건
2.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또는 제공하려고 한 물건
3.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에 의하여 얻은 물건 또는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물건
4. 전호에 정한 물건의 대가로서 얻은 물건

② 몰수는 범인 이외의 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단, 범인 이외의 자에게 속한 물건이라도 범죄 후에 그 자가 정을 알고 취득한 것일 때에는 이를 몰수할 수 있다.

[소16(1941년) 법61 본조 개정]

### (추징)

**제19조의2** 전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정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소16(1941년) 법61 본조 추가]

### (몰수의 제한)

**제20조** 구류 또는 과료 만에 해당하는 죄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몰수를 부과할 수 없다. 단,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물건의 몰수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22(1947년) 법124 본조 개정]

### (미결구류일수의 본형산입)

**제21조** 미결구류의 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다.

## 제 3 장 기간계산

### (기간계산)

**제22조** 월 또는 년에 의하여 기간을 정한 때에는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

### (형기의 계산)

**제23조** ① 형기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구금되지 아니한 일수는 재판이 확정된 후라도 형기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수형 등의 초일 및 석방)

**제24조** ① 수형의 초일은 시간에 관계없이 1일로 계산한다. 시효기간의 초일에 관하여도 같다.

② 형기가 종료된 경우에 석방은 그 종료일의 다음 날에 행한다.

## 제 4 장 형의 집행유예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 (집행유예)

**제25조** ① 다음에 정한 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정상에 따라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1. 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적이 없는 자
2. 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적이 있어도 그 집행을 종료한 날 또는 그 집행의 면제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적이 없는 자

② 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적이 있어도 그 집행이 유예된 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고 정상에 특히 참작할 바 있는 경우에는 전항과 같다. 단,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에 붙여지고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22(1947년) 법124 본조 개정, 소28(1953년) 법195 제1항 개정·2항 추가, 소29(1954년) 법57 제2항 개정, 평3(1991년) 법31 제1항 개정]

### (보호관찰)

**제25조의2** ① 전조 제1항의 경우에는 유예의 기간 중 보호관찰을 붙일 수 있고, 동조 제2항의 경우에는 유예의 기간 중 보호관찰에 붙인다.

② 보호관찰은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이 잠정적으로 해제된 때에는 전조 제2항 단서 및 제26조의 2 제2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그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보호관찰

에 붙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소28(1953년) 법195 본조 추가, 소29(1954년) 법57 본조 개정]

### (집행유예의 필요적 취소)

**제26조** 다음에 정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단, 제3호의 경우에 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자인 때 또는 다음 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예의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지고, 그 형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없는 때
2. 유예의 선고 전에 범한 다른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지고, 그 형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없는 때
3. 유예의 선고 전에 다른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것이 발각된 때

[소22(1947년) 법124 제2항 추가, 소28(1953년) 법195 본조 개정]

### (집행유예의 재량적 취소)

**제26조의2** 다음에 정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유예의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고 벌금에 처하여진 때
2. 제2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에 붙여진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그 정상이 무거운 때
3. 유예의 선고 전에 다른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지고, 그 집행이 유예된 것이 발각된 때

[소28(1953년) 법195 본조 추가, 소29(1954년) 법57 본조 개정]

### (다른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

**제26조의3**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 때에는, 집행유예 중인 다른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하여도 그 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소28(1953년) 법195 본조 추가]

### (유예기간 경과 효과)

**제27조**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됨이 없이 유예의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제 5 장 가석방 [평17(2005년) 법50 장명 개정]

### (가석방)

**제28조**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에게 개선의 정이 있는 때에는 유기형에 대하여는 그 형기의 3분의 1을, 무기형에 대하여는 10년을 경과한 후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가석방할 수 있다.

[평17(2005년) 법50 본조 개정]

### (가석방의 취소)

**제29조** ① 다음에 정한 경우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1. 가석방 중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때

2. 가석방 전에 범한 다른 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때
  3. 가석방 전의 다른 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하여야 할 때
  4. 가석방 중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② 가석방의 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28(1953년) 법195 제1항 개정, 평17(2005년) 법50 본조 개정]

### (가출장〈仮出場〉)

- 제30조** ① 구류에 처하여진 자는 정상에 따라 언제라도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임시로 출장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할 수 없기 때문에 유치된 자도 전향과 같다.

## 제 6 장 형의 시효 및 형의 소멸

[소22(1947년) 법124 · 법91 장명 개정]

### (형의 시효)

**제31조**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에 의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 (시효의 기간)

**제32조** 시효는 형의 선고가 확정된 후 다음의 기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에 대하여는 30년

2. 무기징역 또는 금고에 대하여는 20년
3.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대하여는 15년
4. 3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대하여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대하여는 5년
6. 벌금에 대하여는 3년
7. 구류, 과료 및 몰수에 대하여는 1년

### (시효의 정지)

**제33조** 시효는 법령에 의하여 집행을 유예하거나 또는 정지한 기간 내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시효의 중단)

**제34조** ① 사형, 징역, 금고 및 구류의 시효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그 집행을 위하여 구속함으로써 중단된다.

② 벌금, 과료 및 몰수의 시효는 집행행위를 함으로써 중단된다.

### (형의 소멸)

**제34조의2**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의 면제를 받은 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하여지지 아니하고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벌금 이하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하여지지 아니하고 5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

② 형의 면제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가 확정된 후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하여지지 아니하고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면제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소22(1947년) 법124 본조 추가]

## 제 7 장 범죄의 불성립 및 형의 감면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 (정당행위)

**제35조** 법령 또는 정당한 업무에 의한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

### (정당방위)

**제36조** ① 급박부정(不正)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행한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의 정도를 초과한 행위는 정상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긴급피난)

**제37조** ①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행한 행위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피하려고 한 피해의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별하지 아니한다. 단, 그 정도를 초과한 행위는 정상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업무상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의)

**제38조** ① 죄를 범할 의사가 없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행위 당시 그 중한 죄에 해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자는 그 중한 죄에 의하여 처단할 수 없다.

③ 법률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에 의하여 죄를 범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단,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제39조** ①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한다.

**제40조(농아자) 삭제**

[평7(1995년) 법91]

**(책임연령)**

**제41조** 14세 미만의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자수 등)**

**제42조** ① 죄를 범한 자가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②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관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을 알리고 그 조치에 맡긴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제 8 장 미수죄

**(미수 감면)**

**제43조**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이를 완수하지 못한 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단,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범죄를 중지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미수죄)**

**제44조** 미수를 벌하는 경우는 각 본조에서 정한다.

## 제 9 장 병합죄 (경합범)

### (병합죄)

**제45조**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한 2개 이상의 죄를 병합죄로 한다. 어떤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확정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죄와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에 한하여 병합죄로 한다.

[소43(1968년) 법61 본조 개정]

### (병과의 제한)

**제46조** ① 병합죄 중 1개의 죄에 대하여 사형에 처할 때에는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한다. 단, 몰수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병합죄 중 1개의 죄에 대하여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할 때에도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한다. 단, 벌금, 과료 및 몰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기징역 및 금고의 가중)

**제47조** 병합죄 중 2개 이상의 죄에 대하여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할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을 가중한 것을 장기로 한다. 단, 각각의 죄에 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 (벌금의 병과 등)

**제48조** ① 벌금과 다른 형은 병과한다. 단, 제46조 제1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병합죄 중 2개 이상의 죄에 대하여 벌금에 처할 때에는 각각의 죄에 대하여 정한 벌금의 다액의 합계 이하로 처단한다.

### (몰수의 부가)

**제49조** ① 병합죄 중 중한 죄에 대하여 몰수를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다른 죄에 대하여 몰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가할 수 있다.

② 2개 이상의 몰수는 병과한다.

### (여죄의 처리)

**제50조** 병합죄 중 이미 확정재판을 거친 죄와 아직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한 죄가 있을 때에는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다시 처단한다.

### (병합죄에 관련된 2개 이상의 형의 집행)

**제51조** ① 병합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형을 합하여 집행한다. 단, 사형을 집행하여야 할 때에는 몰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며,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를 집행하여야 할 때에는 벌금, 과료 및 몰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은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을 가중한 것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에 일반사면〈大赦〉이 있는 경우의 조치)**

**제52조** 병합죄로 처단된 자가 그 일부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大赦)을 받은 때에는 다른 죄에 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구류 및 과료의 병과)**

**제53조** ① 구류 또는 과료와 다른 형은 병과한다. 단, 제4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2개 이상의 구류 또는 과료는 병과한다.

**(1개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죄명에 저촉하는 경우 등의 처리)**

**제54조** ① 1개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죄명에 저촉하거나 범죄의 수단 또는 결과인 행위가 서로 다른 죄명에 저촉할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형에 의하여 처단한다.

② 제49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5조(연속범) 삭제**

[소22(1947년) 법124]

## 제 10 장 누범

### (재범)

**제56조** ① 징역에 처하여진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날 또는 그 집행의 면제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그 자를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재범으로 한다.

② 징역에 해당하는 죄와 동질의 죄에 의하여 사형에 처하여질 자가 그 집행의 면제를 받은 날, 감형에 의하여 징역으로 감경되어 그 집행을 종료한 날 또는 그 집행의 면제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그 자를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병합죄로 처단된 자가 그 병합죄 중 징역에 처하여야 할 죄가 있어도 그 죄가 가장 중한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징역에 처하여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범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징역에 처하여진 것으로 본다.

### (재범 가중)

**제57조** 재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징역의 장기의 2배 이하로 한다.

### (확정 후의 재범 발견에 의한 가중)

**제58조** 삭제

[소22(1947년) 법124]

**(3범 이상의 누범)**

**제59조** 3범 이상의 자에 대하여도 재범의 예에 의한다.

**제 11 장 공범**

**(공동정범)**

**제60조** 2인 이상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자는 전부 정범으로 한다.

**(교사)**

**제61조** ① 사람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에게는 정범의 형을 과한다.

② 교사자를 교사한 자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방조)**

**제62조** ① 정범을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한다.

② 종범을 교사한 자에게는 종범의 형을 과한다.

**(종범 감경)**

**제63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을 감경한다.

**(교사 및 방조의 처벌의 제한)**

**제64조** 구류 또는 과료 만에 처하여야 할 죄의 교사자 및 종범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 (신분범의 공범)

**제65조** ① 범인의 신분에 의하여 구성될 범죄행위에 가공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라도 공범으로 한다.

② 신분에 의하여 특히 형의 경중이 있는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통상의 형을 과한다.

## 제 12 장 작량감경

### (작량감경)

**제66조** 범죄의 정상에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법률상의 가감과 작량감경)

**제67조** 법률상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라도 작량감경을 할 수 있다.

## 제 13 장 가중감경의 방법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 (법률상 감경의 방법)

**제68조** 법률상 형을 감경하여야 할 1개 또는 2개 이상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예에 의한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의 징역,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로 한다.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을 줄인다.
4.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 및 소액의 2분의 1을 줄인다.
5.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을 줄인다.
6.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을 줄인다.

### (법률상 감경과 형의 선택)

**제69조** 법률상 형을 감경하여야 할 경우에 각 본조에 2개 이상의 형명(刑名)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 (단수〈端數〉의 절사〈切捨〉)

**제70조**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감경함으로써 1일에 미치지 못하는 단수가 생긴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평3(1991년) 법31 제2항 삭제]

### (작량감경의 방법)

**제71조** 작량감경을 할 때에도 제68조 및 전조의 예에 의한다.

### (가중·감경의 순서)

**제72조** 동시에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재범 가중
2. 법률상의 감경
3. 병합죄의 가중
4. 작량감경

## 제 2 편 죄

### 제 1 장 삭제

제73조 내지 제76조(황실에 대한 죄) 삭제

[소22(1947년) 법124]

### 제 2 장 내란에 관한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 (내란)

**제77조** ① 국가의 통치기구를 파괴하거나 또는 그 영토에서 국권을 배제하여 권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에 헌법이 정하는 통치의 기본질서를 괴란(壞亂)할 목적으로 폭동을 한 자는 내란의 죄로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단한다.

1. 주도자는 사형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군중을 지휘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금고에 처하고 그 밖의 제반 직무에 종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3. 부화수행(付和隨行)하거나 그 밖에 단순히 폭동에 참가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의 미수는 별한다. 단, 동항 제3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비 및 음모)

**제78조** 내란의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 (내란 등 방조)

**제79조** 병기, 자금 혹은 식량을 공급하거나 또는 그 밖의 행위에 의하여 전 2조의 죄를 방조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 (자수에 의한 형의 면제)

**제80조** 전 2조의 죄를 범한 자라도 폭동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

### 제 3 장 외환에 관한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 (외환유치)

**제81조** 외국과 통모하여 일본국에 대하여 무력을 행사하게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소22(1947년) 법124 본조 개정]

**(외환원조)**

**제82조** 일본국에 대하여 외국으로부터 무력행사가 있는 때에 이에 가담하여 그 군무에 종사하거나 그 밖의 군사상의 이익을 준 자는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소22(1947년) 법124 본조 개정]

**제83조 내지 제86조(이적행위) 삭제**

[소22(1947년) 법124]

**(미수죄)**

**제87조** 제81조 및 제82조의 죄의 미수는 별한다.

[소22(1947년) 법124 본조 개정]

**(예비 및 음모)**

**제88조** 제81조 또는 제82조의 죄의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소22(1947년) 법124 본조 개정]

**제89조(전시동맹국에 대한 행위) 삭제**

[소22(1947년) 법124]

## 제 4 장 국교에 관한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 제90조 및 제91조(외국원수·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 삭제

[소22(1947년) 법124]

### (외국국장〈國章〉손괴 등)

**제92조** ① 외국에 대하여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그 국가의 국기 그 밖의 국장을 손괴, 제거 또는 오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는 외국정부의 청구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평3(1991년) 법31 본조 개정]

### (사전〈私戰〉예비 및 음모)

**제93조** 외국에 대하여 사적으로 전투행위를 할 목적으로 그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단, 자수한 자는 그 형을 면제한다.

### (중립명령위반)

**제94조** 외국이 교전하고 있을 때에 국외중립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3(1991년) 법31 본조 개정]

## 제 5 장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 (공무집행방해 및 직무강요)

**제95조**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게 어떤 처분을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그 직을 사퇴하게 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도 전항과 같다.

[평18(2006년) 법36 제1항 개정]

### (봉인 등 파기)

**제96조**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의 표시를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무효가 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3(1991년) 법31 본조 개정]

### (강제집행방해)

**제96조의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가장양도하거나 가장된 채무를 부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16(1941년) 법61 본조 추가, 평3(1991년) 법31 본조 개정]

**(경매 등 방해)**

**제96조의3** 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공공의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정한 가격을 해하거나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담합한 자도 전항과 같다.

[소16(1941년) 법61 본조 추가, 평3(1991년) 법31 제1항 개정]

**제 6 장 도주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도주)**

**제97조** 재판의 집행에 의하여 구금된 기결 또는 미결의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중도주)**

**제98조** 전조에 규정하는 자 또는 구인장의 집행을 받은 자가 구금장(拘禁場)이나 구속을 위한 기구를 손괴,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2인 이상이 통모하여 도주한 때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피구금자 탈취)**

**제99조** 법령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도주원조)**

**제100조** ① 법령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도주시킬 목적으로 기구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간수자 등에 의한 도주 원조)**

**제101조** 법령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하거나 호송하는 자가 그 구금된 자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죄)**

**제102조** 이 장의 죄의 미수는 별한다.

**제 7 장 범인은닉 및 증거인멸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범인은닉 등)**

**제103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또는 구금 중에 도주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3(1991년) 법31 본조 개정]**

**(증거인멸 등)**

**제104조**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3(1991년) 법31 본조 개정]

**(친족에 의한 범죄에 관한 특례)**

**제105조** 전 2조의 죄에 대하여는 범인 또는 도주한 자의 친족이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범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소22(1947년) 법124, 소33(1958년) 법107 본조 개정]

**(증인 등 협박)**

**제105조의2** 자기나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심판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나 그의 친족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면회를 강청(强請)하거나 강담(强談), 위박(威迫)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33(1958년) 법107 본조 추가, 평3(1991년) 법31 본조 개정]

**제 8 장 소란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소란)**

**제106조** 다중으로 집합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소란의 죄로서 다음 구별에 따라 처단한다.

1. 주모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타인을 지휘하거나 타인에게唆使하여 기세를 도운 자는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부화수행(付和隨行)한 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3(1991년) 법31 본조 개정]

### (다중불해산)

**제107조** 폭행 또는 협박을 하기 위하여 다중이 집합한 경우에 권한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3회 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모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그 밖의 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3(1991년) 법31 본조 개정]

## 제 9 장 방화 및 실화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 (현주건조물방화)

**제108조** 불을 놓아 현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재 사람이 있는 건조물, 기차, 전차, 함선 또는 광갱을 불태운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비현주건조물 등 방화)

**제109조** ① 불을 놓아 현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한 현재

사람이 없는 건조물, 함선 또는 광갱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때에는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건축물 등 이외 방화)

**제110조** ① 불을 놓아 전 2조에 규정하는 물건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3(1991년) 법31 제2항 개정]

### (연소〈延燒〉)

**제111조** ① 제109조 제2항 또는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08조 또는 제10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물건에 연소시킨 때에는 3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고 이로 인하여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물건에 연소시킨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미수죄)

**제112조** 제108조 및 제109조 제1항의 죄의 미수는 벌한다.

**(예비)**

**제113조** 제108조 또는 제109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소화방해)**

**제114조** 화재 시에 진화용 물건을 은닉 또는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진화를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압류 등에 관련된 자기의 물건에 관한 특례)**

**제115조** 제109조 제1항 및 제1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어도 압류를 받거나 물권을 부담하거나 임대하거나 또는 보험에 든 경우에 이를 소취한 때에는 타인의 물건을 소취한 자의 예에 의한다.

**(실화)**

**제116조** ① 실화에 의하여 제108조에 규정하는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09조에 규정하는 물건을 소취한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실화에 의하여 제109조에 규정하는 물건으로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 또는 제110조에 규정하는 물건을 소취하고 이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과 같다.

[소16(1941년) 법61·평3(1991년) 법31 제1항 개정]

### (격발물〈激發物〉파열)

**제117조** ① 화약, 보일러 그 밖의 격발물을 파열시켜 제108조에 규정하는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09조에 규정하는 물건을 손괴한 자는 방화의 예에 의한다. 제109조에 규정하는 물건으로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 또는 제110조에 규정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행위가 과실에 의한 때에는 실화의 예에 의한다.

### (업무상실화 등)

**제117조의2** 제116조 또는 전조 제1항의 행위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한 때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16(1941년) 법61 본조 추가, 평3(1991년) 법31 본조 개정]

### (가스누출 등 및 동 치사상)

**제118조** ① 가스, 전기 또는 증기를 누출, 유출시키거나 차단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가스, 전기 또는 증기를 누출, 유출시키거나 차단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의 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

[평3(1991년) 법31 제1항 개정]

## 제 10 장 출수(出水) 및 수리에 관한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 (현주건조물 등 침해)

**제119조** 물을 넘겨 현재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또는 현재 사람이 있는 건조물, 기차, 전차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비현주건조물 등 침해)

**제120조** ① 물을 넘겨 전조에 규정하는 물건 이외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침해한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물건이 압류되거나 물권을 부담하거나 임대하거나 또는 보험에 든 경우에 한하여 전항의 예에 의한다.

### (수해방지방해)

**제121조** 수해 시에 수방용의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과실 건축물 등 침해)

**제122조** 과실로 인하여 물을 넘겨 제119조에 규정하는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3(1991년) 법31 본조 개정]

### (수리방해 및 출수<出水>위험)

**제123조** 제방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수리의 방해가 될 행위 또는 물을 넘길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3(1991년) 법31 본조 개정]

## 제 11 장 왕래를 방해하는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 (왕래방해 및 동 치사상)

**제124조** ① 육로, 수로 또는 다리를 손괴하거나 불통케 하여 왕래의 방해를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의 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

[평3(1991년) 법31 제1항 개정]

### (왕래위험)

**제125조** ① 철도 또는 그 표지를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기차 또는 전차의 왕래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등대 또는 부표를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함선의 왕래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과 같다.

### (기차전복 등 및 동 치사)

**제126조** ① 현재 사람이 있는 기차 또는 전차를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현재 사람이 있는 함선을 전복, 침몰시키거나 파괴한 자도 전항과 같다.

③ 전 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 (왕래위험에 의한 기차전복 등)

**제127조** 제125조의 죄를 범하여 기차나 전차를 전복, 파괴하거나 또는 함선을 전복, 침몰시키거나 파괴한 자도 전조의 예에 의한다.

### (미수죄)

**제128조** 제124조 제1항, 제125조 및 제126조 제1항 및 제2항의 죄의 미수는 벌한다.

### (과실 왕래위험)

**제129조** ① 과실로 인하여 기차, 전차, 함선의 왕래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기차, 전차를 전복, 파괴하거나 함선을 전복, 침몰, 파괴한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3(1991년) 법31 본조 개정]

## 제 12 장 주거를 침범하는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 (주거침입 등)

**제130조**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또는 사람이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함선에 침입하거나 또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3(1991년) 법31 본조 개정]

### 제131조(황거 침입) 삭제

[소22(1947년) 법124]

### (미수죄)

**제132조** 제130조의 죄의 미수는 별한다.

[소22(1947년) 법124 본조 개정]

## 제 13 장 비밀을 침해하는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 (신서〈信書〉개봉)

**제133조** 정당한 이유 없이 봉함한 신서를 개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3(1991년) 법31 본조 개정]

### (비밀누설)

**제134조** ① 의사, 약사, 의약품판매업자, 조산사, 변호사, 변호인, 공증인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업무상 취급하였던 것에 관하여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종교, 기도 또는 제사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업무상 취급하였던 것에 관하여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평3(1991년) 법31 본조 개정]

### (친고죄)

**제135조** 이 장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 14 장 아편에 관한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 (아편 수입 등)

**제136조** 아편을 수입하거나 제조,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아편흡식기구 수입 등)

**제137조**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수입, 제조,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세관직원에 의한 아편 수입 등)

**제138조** 세관직원이 아편 또는 아편을 흡식하기 위한 기구를 수입하거나 이들의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아편흡식 및 장소제공)

**제139조** ① 아편을 흡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편의 흡식을 위한 건물 또는 방을 제공하여 이익을 도모한 자는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아편 등 소지)

**제140조** 아편 또는 아편을 흡식하기 위한 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죄)**

**제141조** 이 장의 죄의 미수는 벌한다.

**제 15 장 음료수에 관한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정수 오염)**

**제142조** 사람의 음료에 제공하는 정수를 오염시켜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3(1991년) 법31 본조 개정]

**(수도 오염)**

**제143조** 수도에 의하여 공중에 공급하는 음료의 정수 또는 그 수원을 오염시켜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수 독물 등 혼입)**

**제144조** 사람의 음료로 제공되는 정수에 독물 그 밖의 사람의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수 오염 등 치사상)**

**제145조** 전 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의 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

**(수도 독물 등 혼입 및 동 치사)**

**제146조** 수도에 의하여 공중에 공급되는 음료의 정수 또는 그 수원에 독물 그 밖의 사람의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수도 손괴 및 불통)**

**제147조** 공중의 음료로 제공되는 정수의 수도를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16 장 통화 위조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통화 위조 및 행사 등)**

**제148조**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변조된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사람에게 교부 또는 수입한 자도 전항과 같다.

**(외국통화 위조 및 행사 등)**

**제149조** ① 행사할 목적으로 일본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변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사람에게 교부 또는 수입한 자도 전항과 같다.

**(위조 통화 등 취득)**

**제150조**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죄)**

**제151조** 전 3조의 죄의 미수는 벌한다.

**(취득 후 지정〈知情〉 행사 등)**

**제152조**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취득한 후에 그것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 줄 알고 이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사람에게 교부한 자는 그 액면가격의 3배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2천엔 이하로 할 수 없다.

[평3(1991년) 법31 본조 개정]

**(통화 위조 등 준비)**

**제153조**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의 위조 또는 변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 또는 원료를 준비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17 장 문서위조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조서〈詔書〉 위조 등)**

**제154조** ① 행사할 목적으로 옥새, 국새나 어명을 사용하여 조서 그 밖

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또는 위조한 옥새, 국새나 어명을 사용하여 조서 그 밖의 문서를 위조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옥새 또는 국새를 날인하거나 어명을 서명한 조서 그 밖의 문서를 변조한 자도 전항과 같다.

### (공문서 위조 등)

**제155조**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의 인장 또는 서명을 사용하여 공무소나 공무원이 작성하여야 할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공무소나 공무원의 인장 또는 서명을 사용하여 공무소나 공무원이 작성하여야 할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날인하거나 서명한 문서 또는 도화를 변조한 자도 전항과 같다.

③ 전 2항에 규정한 것 이외에 공무소나 공무원이 작성하여야 할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공무소나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 또는 도화를 변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3(1991년) 법31 제3항 개정]

### (허위공문서작성 등)

**제156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서 또는 도화를 변조한 때에는 인장 또는 서명의 유무로 구별하여 전 2조의 예에 의한다.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등)**

**제157조**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등기부, 호적부 그 밖의 권리, 의무에 관한 공정증서의 원본에 불실한 기재를 하게 하거나 또는 권리, 의무에 관한 공정증서의 원본으로 사용되는 전자적 기록에 불실한 기록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면허장, 감찰 또는 여권에 불실한 기재를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죄의 미수는 별한다.

[소16(1941년) 법61 제1항·제2항 개정, 소62(1987년) 법52 제1항 개정, 평3(1991년) 법31 제1항·2항 개정]

**(위조공문서 행사 등)**

**제158조** ① 제154조 내지 전조의 문서 또는 도화를 행사하거나 전조 제1항의 전자적 기록을 공정증서의 원본으로 사용한 자는, 그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허위의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불실한 기재 또는 기록을 하게 한 자와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의 미수는 별한다.

[소62(1987년) 법52 제1항 개정]

### (사문서 위조 등)

**제159조**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또는 서명을 사용하여 권리의 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타인의 인장 또는 서명을 사용하여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이 날인하거나 서명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변조한 자도 전항과 같다.

③ 전 2항에 규정한 것 외에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3(1991년) 법31 제3항 개정]

### (허위진단서 등 작성)

**제160조** 의사가 공무소에 제출하여야 할 진단서, 검안서 또는 사망증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3(1991년) 법31 본조 개정]

### (위조사문서 등 행사)

**제161조** ① 전 2조의 문서 또는 도화를 행사한 자는 그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와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의 미수는 별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전자적 기록 부정작성 및 공용)

**제161조의2** ①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 사무처리에 제공되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부정하게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할 전자적 기록에 관계되는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부정하게 작성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제1항의 목적으로 타인의 사무처리용으로 제공한 자는 그 전자적 기록을 부정하게 작성한 자와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④ 전항의 죄의 미수는 벌한다.

[소62(1987년) 법52 본조 추가, 평3(1991년) 법31 제1항·2항 개정,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제 18 장 유가증권위조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 (유가증권위조 등)

**제162조**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채증서, 관청의 증권, 회사의 주권 그 밖의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3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행사의 목적으로 유가증권에 허위의 기입을 한 자도 전항과 같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위조유가증권 행사 등)**

**제163조** ① 위조, 변조의 유가증권 또는 허위의 기입이 있는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 또는 수입한 자는 3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의 미수는 벌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제 18 장의2 지불용 카드 · 전자적 기록에 관한 죄**

**[평13(2001년) 법97 본장 추가]**

**(지불용 카드 · 전자적 기록 부정작출 등)**

**제163조의2** ① 타인의 재산상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 사무처리용으로 제공한 전자적 기록으로서 신용카드 그 밖의 대금 또는 요금의 지불용카드를 구성하는 것을 부정하게 만든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금과 저금의 인출용 카드를 구성하는 전자적 기록을 부정하게 만든 자도 같다.

② 부정하게 만들어진 전항의 전자적 기록을 동항의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상의 사무처리용으로 제공한 자도 동항과 같다.

③ 부정하게 만들어진 제1항의 전자적 기록을 그 구성부분으로 하는 카드를 동항의 목적으로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한 자도 동항과 같다.

[평13(2001년) 법97 본조 추가]

### (부정 전자적기록 카드 소지)

**제163조의3** 전조 제1항의 목적으로 동조 제3항의 카드를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13(2001년) 법97 본조 추가]

### (지불용 카드 · 전자적 기록 부정작출 준비)

**제163조의4** ① 제163조의2 제1항의 범죄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동항의 전자적 기록의 정보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을 알고 그 정보를 제공한 자도 같다.

② 부정하게 취득한 제163조의2 제1항의 전자적 기록의 정보를 전항의 목적으로 보관한 자도 동항과 같다.

③ 제1항의 목적으로 기계 또는 원료를 준비한 자도 동항과 같다.

[평13(2001년) 법97 본조 추가]

### (미수죄)

**제163조의5** 제163조의2 및 전조 제1항의 죄의 미수는 벌한다.

[평13(2001년) 법97 본조 추가]

## 제 19 장 인장위조의 죄 [평7(1996년) 법91 장명 개정]

### (옥새 위조 및 부정사용 등)

**제164조** ① 행사할 목적으로 옥새, 국새 또는 어명을 위조한 자는 2년 이

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옥새, 국새 또는 어명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위조한 옥새, 국새 또는 어명을 사용한 자도 전항과 같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공인 위조 및 부정사용 등)

**제165조**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의 인장 또는 서명을 위조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소나 공무원의 인장 또는 서명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위조한 공무소나 공무원의 인장 또는 서명을 사용한 자도 전항과 같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공기호 위조 및 부정사용 등)

**제166조**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를 사용한 자도 전항과 같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사인 위조 및 부정사용 등)

**제167조**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또는 서명을 위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의 인장 또는 서명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위조한 인장 또는 서명을 사용한 자도 전항과 같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미수죄)

**제168조** 제164조 제2항, 제165조 제2항, 제166조 제2항 및 전조 제2항의 죄의 미수는 별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제 20 장 위증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 (위증)

**제169조**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3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자백에 의한 형의 감면)

**제170조**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증언을 한 사건에 대하여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 또는 징계처분이 행하여지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허위감정 등)**

**제171조** 법률에 의해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 2조의 예에 의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제 21 장 허위고소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허위고소 등)**

**제172조** 타인에게 형사 또는 징계의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 고발 그 밖의 신고를 한 자는 3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자백에 의한 형의 감면)**

**제173조**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를 한 사건에 대하여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 또는 징계처분이 행하여지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제 22 장 음란, 간음 및 중혼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공연음란)**

**제174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 이

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소22(1947년) 법124 · 평3(1991년) 법31 ·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음란물 반포 등)

**제175조** 음란한 문서, 도화 그 밖의 물건을 반포 또는 판매하거나 공연히 진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만엔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한다. 판매의 목적으로 이들의 물건을 소지한 자도 같다.

[소22(1947년) 법124 · 평3(1991년) 법31 ·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강제음란)

**제176조** 13세 이상의 남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남녀에 대하여 음란한 행위를 한 자도 같다.

[평7(1995년) 법91 · 평16(2004년) 법156 본조 개정]

### (강간)

**제17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이상의 여자를 간음한 자는 강간의 죄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한 자도 같다.

[평7(1995년) 법91 · 평16(2004년) 법156 본조 개정]

### (준강제음란 및 준강간)

**제178조** ①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또는 심신을 상실시키거나 항거불능으로 만들어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제176조의 예에 의한다.

② 여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또는 심신을 상실시키거나 항거불능으로 만들어 간음한 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평16(2004년) 법156 제1항 개정 · 제2항 추가]

### (집단강간 등)

**제178조의2** 2인 이상의 자가 현장에서 공동하여 제177조 또는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4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평16(2004년) 법156 본조 추가]

### (미수죄)

**제179조** 제176조 내지 전조의 죄의 미수는 벌한다.

[평7(1995년) 법91 · 평16(2004년) 법156 본조 개정]

### (친고죄)

**제180조** ① 제176조 내지 제178조의 죄 및 이들 죄의 미수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2인 이상의 자가 현장에서 공동하여 범한 제176조, 제

178조 제1항의 죄 또는 이들 죄의 미수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33(1958년) 법107 제2항 추가, 평16(2004년) 법156 본조 개정]

### (강제음란 등 치사상)

**제181조** ① 제176조, 제178조 제1항의 죄 또는 이들 죄의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77조 또는 제178조 제2항의 죄 또는 이들 죄의 미수죄를 범하여 여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78조의2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여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평16(2004년) 법156 제1항 개정 · 2항 · 3항 추가]

### (음행권유)

**제182조** 영리의 목적으로 음행의 상습이 없는 여자를 권유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3(1991년) 법31 ·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제183조 [간통]** 삭제[소22(1947년) 법124]

**(중혼)**

**제184조**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시 혼인을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상대방이 되어 혼인을 한 자도 같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제 23 장 도박 및 복권에 관한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도박)**

**제185조** 도박을 한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에 공(供)하는 물건을 건 것에 불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3(1991년) 법31 ·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상습도박 및 도박장 개장 등 이익도모)**

**제186조** ① 상습으로 도박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도박장을 개장하거나 도박꾼을 결합하여 이익을 도모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복권 발매 등)**

**제187조** ① 복권을 발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복권 발매의 중개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에 규정한 것 외에 복권을 수수한 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평3(1991년) 법31 ·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제 24 장 예배소 및 분묘에 관한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 (예배소 불경〈不敬〉 및 설교 등 방해)

**제188조** ① 신사, 불당, 묘소 그 밖의 예배소에 대하여 공연히 불경한 행위를 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설교, 예배 또는 장례식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3(1991년) 법31 ·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분묘발굴)

**제189조** 분묘를 발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사체손괴 등)

**제190조** 사체, 유골, 유발(遺髮) 또는 관에 넣어둔 물건을 손괴, 유기 또는 영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분묘발굴 사체손괴 등)**

**제191조** 제189조의 죄를 범하고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에 넣어둔 물건을 손괴, 유기 또는 영득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변사자 밀장<密葬>)**

**제192조** 검시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사자를 매장한 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평3(1991년) 법31 ·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제 25 장 독직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공무원 직권남용)**

**제193조**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소22(1947년) 법124 ·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특별공무원 직권남용)**

**제194조** 재판, 검찰,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들의 직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한 때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소22(1947년) 법124 ·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특별공무원 폭행·능학<陵虐>)

**제195조** ① 재판, 검찰,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들의 직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피고인, 피의자 그 밖의 자에 대하여 폭행, 능욕 또는 가학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 법령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그 구금된 자에 대하여 폭행, 능욕 또는 가학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소22(1947년) 법124 제1항 개정,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특별공무원 직권남용 등 치사상)

**제196조**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의 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수뢰, 수탁수뢰 및 사전수뢰)

**제197조**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 청탁을 받은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으로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소16(1941년) 법61 · 소55(1980년) 법30 · 평7(1995년) 법91 · 평15(2003년) 법138 본조 개정]

**(제3자 뇌물공여)**

**제197조의2**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그 공여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소16(1941년) 법61 본조 추가, 소55(1980년) 법30·평7(1995년) 법91·평15(2003년) 법138 본조 개정]

**(가중수뢰 및 사후수뢰)**

**제197조의3** ① 공무원이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그 공여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아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소16(1941년) 법61 본조 추가, 소55(1980년) 법30 제3항 개정, 평7(1995년) 법91·평15(2003년) 법138 본조 개정]

**(알선수뢰)**

**제197조의4** 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알선하거나 한 것의 보수로서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소33(1958년) 법107 본조 추가, 소55(1980년) 법30 ·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몰수 및 추징)

**제197조의5**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수수한 뇌물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소16(1941년) 법61 본조 추가, 소33(1958년) 법107 조문 내림 ·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증뢰)

**제198조** 제197조 내지 제197조의4에 규정하는 뇌물을 공여, 신청 또는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16(1941년) 법61 본조 개정, 소33(1958년) 법107 제2항 추가, 소55(1980년) 법30 제1항 개정 · 2항 삭제, 평3(1991년) 법31 · 평7(1995년) 법  
91 본조 개정]

## 제 26 장 살인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 (살인)

**제199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평7(1995년) 법91 · 평16(2004년) 법156 본조 개정]

**제200조 [존속살인]** 삭제 [평7(1995년) 법91]

**(예비)**

**제201조** 제1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정상에 따라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자살관여 및 동의살인)**

**제202조**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거나, 사람을 그 촉탁을 받거나 승낙을 얻어 살해한 자는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미수죄)**

**제203조** 제199조 및 전조의 죄의 미수는 벌한다.

## **제 27 장 상해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상해)**

**제204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3(1991년) 법31 · 평7(1995년) 법91 · 평16(2004년) 법156 본조 개정]

### (상해치사)

**제205조** 신체를 상해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제2항 삭제), 평16(2004년) 법156 본조 개정]

### (현장조세〈助勢〉)

**제206조** 전 2조의 범죄가 행하여진 경우에 현장에서 가세한 자는 스스로 사람을 상해하지 아니하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한다.

[평3(1991년) 법31 ·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동시상해의 특례)

**제207조** 2인 이상으로 폭행을 가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각자의 폭행에 의한 상해의 경중을 알 수 없거나 그 상해를 일으킨 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동하여 실행한 자가 아니라도 공범의 예에 의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폭행)

**제208조** 폭행을 가한 자가 사람을 상해함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소22(1947년) 법124 제1항 개정 · 제2항 삭제, 평3(1991년) 법3 ·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위험운전치사상)**

**제208조의2** ①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주행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 진행을 제어하는 것이 곤란한 높은 속도로 또는 그 진행을 제어하는 기능을 갖추지 않고 자동차를 주행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도 같다.

② 사람 또는 차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행 중의 자동차의 직전에 진입하거나 기타 통행 중인 사람 또는 차에 현저하게 접근하고, 또한 중대한 교통위험을 발생하게 할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과 같다. 적색신호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호를 일부러 무시하고, 또한 중대한 교통위험을 발생하게 할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도 같다.

[평13(2001년) 법138 본조 추가, 평16(2004년) 법156 제1항 개정, 평19(2007년) 법54 제2항 개정]

**(흥기준비 집합 및 결집)**

**제208조의3** ① 2인 이상의 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서 공동하여 해를 가할 목적으로 집합한 경우에 흥기를 준비하거나 그 준비가 있는 것을 알고 집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흥기를 준비하거나 그 준비가 있는 것을 알고 사람을

집합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소33(1958년) 법107 본조 추가, 평3(1991년) 법31 제1항 개정,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평13(2001년) 법138 조문 내림]

## 제 28 장 과실상해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 (과실상해)

**제209조**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한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평3(1991년) 법31 제1항 개정,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과실치사)

**제210조**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3(1991년) 법31 ·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제211조** ①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도 같다.

② 자동차 운전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상해가 가벼운 때에는 정상에 따라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소43(1968년) 법61 · 평3(1991년) 법31 ·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평13(2001년) 법138 제2항 추가, 평18(2006년) 법36 제1항 개정, 평19(2007년) 법54 제2항 개정]

## 제 29 장 낙태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 (낙태)

**제212조** 임신 중의 여자가 약물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동의낙태 및 동 치사상)

**제213조** 여자의 촉탁을 받거나 그 승낙을 얻고 낙태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로 인하여 여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업무상낙태 및 동 치사상)

**제214조** 의사, 조산사, 약사 또는 의약품판매업자가 여자의 촉탁을 받거나 그 승낙을 얻고 낙태하게 한 때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로 인하여 여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평7(1995년) 법91 · 평13(2001년) 법153 본조 개정]

### (부동의 낙태)

**제215조** ① 여자의 촉탁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낙태하게 한 자는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의 미수는 별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부동의 낙태치사상)

**제216조** 전조의 죄를 범하여 여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의 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제 30 장 유기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 (유기)

**제217조** 노년, 유년, 신체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부조를 필요로 하

는 자를 유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보호책임자유기 등)

**제218조** 노년자, 유년자, 신체장애자 또는 병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가 이들을 유기하거나 그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제2항 삭제)]

### (유기 등 치사상)

**제219조**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의 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제 31 장 체포 및 감금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 (체포 및 감금)

**제220조** 불법으로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한 자는 3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2항 삭제, 평17(2005년) 법66 본조 개정]

### (체포 등 치사상)

**제221조** 전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의 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제 32 장 협박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 (협박)

**제222조** 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하여 해를 가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하여 해를 가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도 전항과 같다.

[소22(1947년) 법124 · 평3(1991년) 법31 제1항 개정,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강요)

**제223조** 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하여 해를 가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하여 해를 가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 협박하고 사람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자도 전항과 같다.

③ 전 2항의 죄의 미수는 별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제 33 장 약취, 유괴 및 인신매매의 죄

[평17(2005년) 법66 장명 개정]

#### (미성년자 약취 및 유괴)

**제224조**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괴한 자는 3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평7(1995년) 법91 · 평17(2005년) 법66 본조 개정]

#### (영리목적 등 약취 및 유괴)

**제225조** 영리, 음란, 결혼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가해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하거나 유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평7(1995년) 법91 · 평17(2005년) 법66 본조 개정]

#### (몸값 목적 약취 등)

**제225조의2** ① 근친자 기타 약취 또는 유괴된 자의 안부를 우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약취 또는 유괴한 자가 근친자 기타 약취 또는 유괴된 자의 안부를 우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소39(1964년) 법124 본조 추가,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소재국외 이송목적 약취 및 유괴)

**제226조** 소재국 외로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괴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소22(1964년) 법124 ·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평17(2005년) 법66 본조 개정 · 2항 삭제]

### (인신매매)

**제226조의2** ① 사람을 매수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미성년자를 매수한 자는 3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영리, 음란, 결혼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가해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사람을 매도한 자도 전항과 같다.

⑤ 소재국 외로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평17(2005년) 법66 본조 추가]

### (피약취자 등 소재국외 이송)

**제226조의3** 약취, 유괴 또는 매매된 자를 소재국 외로 이송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평17(2005년) 법66 본조 추가]

**(피약취자 인도 등)**

**제227조** ① 제224조, 제225조 또는 전 3조의 죄를 범한 자를 방조할 목적으로 약취, 유괴 또는 매매된 자를 인도, 수수, 수송, 장닉(藏匿) 또는 은피(隱避)시킨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25조의2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방조할 목적으로 약취 또는 유괴된 자를 인도, 수수, 수송, 장닉(藏匿) 또는 은피(隱避)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영리, 음란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가해의 목적으로 약취, 유괴 또는 매매된 자를 인도, 수수, 수송 또는 장닉(藏匿)한 자는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25조의2 제1항의 목적으로 약취 또는 유괴된 자를 수수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약취 또는 유괴된 자를 수수한 자가 근친자 기타 약취 또는 유괴된 자의 안부를 우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이를 요구한 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소39(1964년) 법124 제1항 개정 · 2항 · 4항 추가,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평17(2005년) 법66 제1항~3항 개정]

**(미수죄)**

**제228조** 제224조, 제225조, 제225조의2 제1항, 제226조 내지 제226조의3, 전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의 미수는 벌한다.

[소39(1964년) 법124 본조 추가,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해방에 의한 형의 감경)

**제228조의2** 제225조의2, 제227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한 자가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약취 또는 유괴된 자를 안전한 장소에 해방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소39(1964년) 법124 본조 추가,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몸값 목적 약취 등 예비)

**제228조의3** 제225조의2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자수한 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소39(1964년) 법124 본조 추가,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친고죄)

**제229조** 제224조의 죄, 제225조의 죄 및 이들 죄를 방조할 목적으로 범한 제227조 제1항의 죄, 동조 제3항의 죄 및 이들 죄의 미수죄는 영리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가해의 목적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약취, 유괴 또는 매매된 자가 범인과 혼인을 한 때에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고소의 효력이 없다.

[소39(1964년) 법124 · 평7(1995년) 법91 · 평17(2005년) 법66 본조 개정]

## 제 34 장 명예에 대한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 (명예훼손)

**제230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사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한 경우가 아니면 벌하지 아니한다.

[소22(1964년) 법124 · 평3(1991년) 법31 제1항 개정,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경우의 특례)

**제230조의2** ① 전조 제1항의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고 또한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위함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람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간주한다.

③ 전조 제1항의 행위가 공무원 또는 공선(公選)에 의한 공무원의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 진실하다는 증명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소22(1964년) 법124 본조 추가,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모욕)**

**제231조**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여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친고죄)**

**제232조** ① 이 장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고소를 할 수 있는 자가 천황,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또는 황태자인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이, 외국의 군주 또는 대통령인 때에는 그 나라의 대표자가 각각 대신하여 고소한다.

[소22(1964년) 법124 제2항 추가,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제 35 장 신용 및 업무에 대한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

**제233조** 허위의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3(1991년) 법31 ·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위력업무방해)**

**제234조**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전조의 예에 의한다.

### (전자계산기손괴 등 업무방해)

**제234조의2** 사람의 업무에 사용하는 전자계산기 또는 그 용도로 제공되는 전자적 기록을 손괴하거나 사람의 업무에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지령을 부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계산기가 사용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동작을 못하게 하거나 사용목적에 반하는 동작을 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62(1987년) 법52 본조 추가, 평3(1991년) 법31·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제 36 장 절도 및 강도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 (절도)

**제235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절도의 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7(1995년) 법91·평18(2006년) 법36 본조 개정]

### (부동산침탈)

**제235조의2** 타인의 부동산을 침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소35(1960년) 법 83 본조 추가,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강도)**

**제236조**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강도의 죄로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를 얻게 한 자도 동항과 같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강도 예비)**

**제237조** 강도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사후강도)**

**제238조** 절도가 얻은 재물의 탈환을 막거나 체포를 면하거나 죄적을 인멸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때에는 강도로서 논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혼취〈昏醉〉강도)**

**제239조** 사람을 혼취시키고 그 재물을 절취한 자는 강도로서 논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강도치사상)**

**제240조** 강도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평7(1995년) 법91 · 평16(2004년) 법156 본조 개정]

**(강도강간 및 동 치사)**

**제241조** 강도가 여자를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로 인하여 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타인의 점유 등에 관계된 자기의 재물)**

**제242조** 자기의 재물이라도 타인이 점유하거나 공무소의 명령에 의하여 타인이 간수하는 것인 때에는 이 장의 죄에 관하여는 타인의 재물로 본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미수죄)**

**제243조** 제235조 내지 제236조 및 제238조 내지 제241조의 죄의 미수는 벌한다.  
[소35(1960년) 법83 ·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친족간의 범죄에 관한 특례)

**제244조** ①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동거친족 간에 제235조의 죄, 제235조의2의 죄 또는 이들 죄의 미수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전항에 규정하는 친족 이외의 친족 간에 범한 동항에서 규정하는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22(1947년) 법 124 본조 개정, 소35(1960년) 법83 제1항 개정,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전기)

**제245조** 이 장의 죄에 관하여는 전기는 재물로 간주한다.

## 제 37 장 사기 및 공갈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 (사기)

**제246조** ①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를 얻게 한 자도 동항과 같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전자계산기 사용 사기)

**제246조의2** 전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 사람의 사무처리에 사용되는 전자계산기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지령을 부여하여 재산권의 취득상실 또는 변경에 관계되는 부실한 전자적 기록을 만들거나 또는 재산권의 취득상실 또는 변경에 관계되는 허위의 전자적 기록을 사람의 사무처리로 제공하여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를 얻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소62(1987년) 법52 본조 추가,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배임)

**제247조**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3(1991년) 법31 ·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 (준사기)

**제248조**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미약을 이용하여 그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타인에게 이를 얻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공갈)**

**제249조**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를 얻게 한 자도 동항과 같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미수죄)**

**제250조** 이 장의 죄의 미수는 벌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준용)**

**제251조** 제242조, 제244조 및 제245조의 규정은 이 장의 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제 38 장 횡령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횡령)**

**제252조** ①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물건을 횡령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의 물건이라도 공무소로부터 보관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이를 횡령한 자도 전항과 같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업무상 횡령)**

**제253조** 업무상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물건을 횡령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10(1921년) 법77 ·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유실물 등 횡령)**

**제254조** 유실물, 표류물 기타 점유를 떠난 타인의 물건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한다.

[평3(1991년) 법31 ·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준용)**

**제255조** 제244조의 규정은 이 장의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제 39 장 도품 등에 관한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도품 양수 등)**

**제256조** ① 도품 , 기타 재산에 대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하여 영득 된 물건을 무상으로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에 규정하는 물건을 운반, 보관, 유상양수하거나 그 유상처분을 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3(1991년) 법31 제2항 개정,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친족 등의 사이의 범죄에 관한 특례)**

**제257조** ① 배우자간 또는 직계혈족, 동거친족 또는 이들의 배우자 간에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22(1947년) 법124 ·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제 40 장    횡기 및 은닉의 죄    [평7(1995년) 법91 장명 개정]**

**(공용문서 등 횡기)**

**제258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문서 또는 전자적 기록을 횡기한 자는 3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소62(1987년) 법52 ·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사용문서 등 횡기)**

**제259조**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전자적 기록을 횡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소62(1987년) 법52 ·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건조물 등 손괴 및 동 치사상)**

**제260조** 타인의 건조물 또는 함선을 손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의 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기물손괴 등)**

**제261조** 전 3조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상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한다.

[평3(1991년) 법31 ·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자기 물건의 손괴 등)**

**제262조** 자기의 물건이라도 압류되거나 물권을 부담하거나 임대한 것을 손괴하거나 상해한 때에는 전 3조의 예에 의한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경계 손괴)**

**제262조의2**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35(1960년) 법83 본조 추가, 평3(1991년) 법31 ·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신서〈信書〉 은닉)**

**제263조** 타인의 신서를 은닉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한다.

[평3(1991년) 법31 ·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친고죄)**

**제264조** 제259조, 제261조 및 전조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평7(1995년) 법91 본조 개정]

**부 칙** [평성 16(2004년) 12월 8일 법률 제156호] 초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政令)으로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①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형법(이하 ‘구법’이라 함) 제240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형사소송법 제25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병합죄로서 처단해야 하는 죄에 이 법률 시행 전에 범한 것과 시행 후에 범한 것이 있는 경우에 이들 죄에 대하여 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병합죄로서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가중을 할 때에는 구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이들 죄 중 이 법률 시행 후에 범한 것에 대해서

만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형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단하는 경우의 형이 이들 죄 전부에 대해서 구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단하는 경우의 형보다 중한 형이 되는 때에는 그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

## **부 칙** [평성 17(2005년) 5월 25일 법률 제50호] 초

###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政令)으로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검토)**

**제41조** 정부는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법률의 시행상황에 대하여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결과에 근거하여 소요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

## **부 칙** [평성 17(2005년) 6월 22일 법률 제66호] 초

###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조정규정)**

**제2조** 이 법률의 시행일이 범죄의국제화,조직화및정보처리的高도화에대

처하기위한형법등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의 시행일 전인 경우에는, 제1조 중 형법 제3조 제12호 및 제3조의2 제5호의 개정규정 중 ‘제3조 제12호’는 ‘제3조 제11호’로 하고, 제4조 중 조직적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의 개정규정 중 ‘제3조 제1항 제8호’는 ‘제3조 제1항 제4호’로 한다.

**제3조** 이 법률의 시행일이 범죄의국제화,조직화및정보처리的高도화에대처하기위한형법등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의 시행일 전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일의 전일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조직적범죄처벌법 별표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동표 제2호 와(ワ) 중 ‘국외이송 목적 약취 등, 피약취자 수수 등’은 ‘소재국외 이송 목적 약취 및 유괴, 인신매매, 피약취자등 소재국외 이송, 피약취자 인도 등’으로 한다.

**제4조** ① 이 법률 시행일이 여권법및조직적범죄처벌및범죄수익의규제등에관한법률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 제1조 중 여권법 제23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제24조 제4호 및 제24조의2 제2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법 제24조 제2호 중 ‘여권법(소화26년 법률 제267호) 제23조 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3항의 죄에 의해 형에 처해진 자’는 삭제하고, 동호 중 ‘이(イ) 내지 카(力)’는 ‘이(イ) 내지 하(ハ) 및 호(ホ) 내지 카(力)’로 한다.

② 부칙 제1조 제3호에 열거된 규정의 시행일이 여권법 및 조직적범죄처벌및범죄수익의규제등에관한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제1조 중

여권법 제23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개정 규정의 시행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61조의2의2 제1항 제3호 및 제61조의2의4 제1항 제5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들 규정 중 ‘제4호 하(ハ)’는 ‘제4호 하(ハ) 내지 호(ホ)’로 한다.

###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 이 법률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평성 18(2006년) 5월 8일 법률 제36호] 초

###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2조** 다음에 열거하는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형법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예에 의한다.

1.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해 과해진 벌금 또는 과료
2. 형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병합죄로서 처단된 죄에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범한 것과 시행 후에 범한 것이 있는 경우에 이들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과해진 벌금

**부 칙** [평성 19(2007년) 5월 23일 법률 제54호] 초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의 처벌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 3장

일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일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대정 15(1926년) 4월 10일 법률 제60호] 공포

최종개정 : 평성 16(2004년) 12월 8일 법률 제156호

### (집단적 폭행·협박·손괴)

**제1조**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단체나 다중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이거나 흥기를 보이거나 수인이 공동하여 형법[명치 40(1907년) 법률 제45호] 제208조, 제222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가중상해)

**제1조의2** ① 총포 또는 도검류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는 이를 별한다.  
③ 전 2항의 죄는 형법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상습적 상해·폭행·협박·손괴)

**제1조의3** 상습으로 형법 제204조, 제208조, 제222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집단적·상습적 면회강청<強請>·강담<強談>·위박<威迫>)**

**제2조** ①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얻을 목적으로 제1조의 방법에 의하여 면회를 강청하거나 강담·위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적으로 면회를 강청하거나 강담·위박한 자도 전항과 같다.

**(집단범죄 등의 청탁)**

**제3조** ① 제1조의 방법에 의해 형법 제199조, 제204조, 제208조, 제222조, 제223조, 제234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직무를 공여하거나 그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을 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공여를 받거나 요구를 하거나 약속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조의 방법에 의해 형법 제9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전항의 행위를 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소화 62(1987년) 6월 2일 법률 제52호] 초

**(시행기일)**

①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 중 형법 제4조의 다음에 한 조를 추가하는 개정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이은 규정 및 부칙 제4항 신도쿄국제공항의안전확보에관한긴급조치법[소화 53(1978년) 법률 제42호]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개정규정은 국제적으로보호되는자(외교관을 포함한다.)에대한범죄의방지 및처벌에관한조약 또는 인질을잡는행위에관한국제조약이 일본국에 대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② 개정 후의 형법 제4조의2의 규정 및 인질에의한강요행위등의처벌에 관한법률 제5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의2 제3항의 규정 (형법 제4조의2와 관련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전항 단서에 규정하는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일본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조약에 의해 일본국 외에서 범했을 때에도 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죄에 한해 적용한다.

## 부 칙 [평성 16(2004년) 12월 8일 법률 제156호] 초

###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2조** ① 이 법률의 시행일이 범죄의국제화·조직화및정보처리의고도화에 대처하기위한형법등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의 시행일인 경우에는 제3조 중 조직범죄의처벌및범죄수익의규제등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7호의 개정 규정 중 「제3조 제1항 제7호」라고 되어있는 것은 「제3조 제1항

제 3 호」로 한다.

② 이 법률의 시행일이 범죄의국제화·조직화및정보처리的高도화에대처하기위한형법등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 제 5 조의 규정의 시행일인 경우에는 제4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의2 제1항 및 제1조의3 제1항의 개정 규정 중 「제1조의3 제1항」은 「제1조의3」으로 한다.

## 부 록

- ▶▶▶ 1. 刑 法
- ▶▶▶ 2.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 刑 法

(明治四十年四月二十四日法律第四十五号)

最終改正：平成十九年五月二三日法律第五四号

## 第一編 總則

- 第一章 通則(第一条-第八条)
- 第二章 刑(第九条-第二十一条)
- 第三章 期間計算(第二十二条-第二十四条)
- 第四章 刑の執行猶予(第二十五条-第二十七条)
- 第五章 仮釈放(第二十八条-第三十条)
- 第六章 刑の時効及び刑の消滅(第三十一条-第三十四条の二)
- 第七章 犯罪の不成立及び刑の減免(第三十五条-第四十二条)
- 第八章 未遂罪(第四十三条・第四十四条)
- 第九章 併合罪(第四十五条-第五十五条)
- 第十章 累犯(第五十六条-第五十九条)
- 第十一章 共犯(第六十条-第六十五条)
- 第十二章 酌量減輕(第六十六条・第六十七条)
- 第十三章 加重減輕の方法(第六十八条-第七十二条)

## 第二編 罪

- 第一章 削除

- 第二章 内乱に関する罪(第七十七条-第八十条)
- 第三章 外患に関する罪(第八十一条-第八十九条)
- 第四章 国交に関する罪(第九十条-第九十四条)
- 第五章 公務の執行を妨害する罪(第九十五条-第九十六条の三)
- 第六章 逃走の罪(第九十七条-第一百条)
- 第七章 犯人蔵匿及び証拠隠滅の罪(第一百零三条-第一百零五条の二)
- 第八章 騒乱の罪(第一百零六条・第一百零七条)
- 第九章 放火及び失火の罪(第一百零八条-第一百十八条)
- 第十章 出水及び水利に関する罪(第一百十九条-第一百二十三条)
- 第十一章 往来を妨害する罪(第一百二十四条-第一百二十九条)
- 第十二章 住居を侵す罪(第一百三十条-第一百三十二条)
- 第十三章 秘密を侵す罪(第一百三十三条-第一百三十五条)
- 第十四章 あへん煙に関する罪(第一百三十六条-第一百四十一条)
- 第十五章 飲料水に関する罪(第一百四十二条-第一百四十七条)
- 第十六章 通貨偽造の罪(第一百四十八条-第一百五十三条)
- 第十七章 文書偽造の罪(第一百五十四条-第一百六十一条の二)
- 第十八章 有価証券偽造の罪(第一百六十二条・第一百六十三条)
- 第十八章の二 支払用カード電磁的記録に関する罪(第一百六十三条の二-  
第一百六十三条の五)
- 第十九章 印章偽造の罪(第一百六十四条-第一百六十八条)
- 第二十章 偽証の罪(第一百六十九条-第一百七十一条)
- 第二十一章 虚偽告訴の罪(第一百七十二条・第一百七十三条)
- 第二十二章 わいせつ、姦淫及び重婚の罪(第一百七十四条-第一百八十四条)
- 第二十三章 賭博及び富くじに関する罪(第一百八十五条-第一百八十七条)
- 第二十四章 礼拝所及び墳墓に関する罪(第一百八十八条-第一百九十二条)
- 第二十五章 汚職の罪(第一百九十三条-第一百九十八条)

|       |                                |
|-------|--------------------------------|
| 第二十六章 | 殺人の罪(第百九十九条-第二百三条)             |
| 第二十七章 | 傷害の罪(第二百四条-第二百八条の三)            |
| 第二十八章 | 過失傷害の罪(第二百九条-第二百十一条)           |
| 第二十九章 | 墮胎の罪(第二百十二条-第二百十六条)            |
| 第三十章  | 遺棄の罪(第二百七条-第二百十九条)             |
| 第三十一章 | 逮捕及び監禁の罪(第二百二十条・第二百二十一条)       |
| 第三十二章 | 脅迫の罪(第二百二十二条・第二百二十三条)          |
| 第三十三章 | 略取、誘拐及び人身売買の罪(第二百二十四条-第二百二十九条) |
| 第三十四章 | 名誉に対する罪(第二百三十条-第二百三十二条)        |
| 第三十五章 | 信用及び業務に対する罪(第二百三十三条-第二百三十四条の二) |
| 第三十六章 | 窃盜及び強盜の罪(第二百三十五条-第二百四十五条)      |
| 第三十七章 | 詐欺及び恐喝の罪(第二百四十六条-第二百五十一条)      |
| 第三十八章 | 横領の罪(第二百五十二条-第二百五十五条)          |
| 第三十九章 | 盜品等に関する罪(第二百五十六条・第二百五十七条)      |
| 第四十章  | 毀棄及び隱匿の罪(第二百五十八条-第二百六十四条)      |

## 第一編 總則

### 第一章 通則

#### (国内犯)

**第一条** この法律は、日本国内において罪を犯したすべての者に適用する。

2 日本国外にある日本船舶又は日本航空機内において罪を犯した者についても、前項と同様とする。

(すべての者の国外犯)

**第二条** この法律は、日本国外において次に掲げる罪を犯したすべての者に適用する。

- 一 削除
- 二 第七十七条から第七十九条まで(内乱、予備及び陰謀、内乱等幫助)の罪
- 三 第八十一条(外患誘致)、第八十二条(外患援助)、第八十七条(未遂罪)及び第八十八条(予備及び陰謀)の罪
- 四 第四百八条(通貨偽造及び行使等)の罪及びその未遂罪
- 五 第五百十四条(詔書偽造等)、第五百十五条(公文書偽造等)、第五百十七條(公正証書原本不実記載等)、第五百十八條(偽造公文書行使等) 及び公務所又は公務員によって作られるべき電磁的記録に係る第六十一条の二(電磁的記録不正作出及び供用)の罪
- 六 第六十二条(有価証券偽造等) 及び第六十三条(偽造有価証券行使等)の罪
- 七 第六十三条の二から第六十三条の五まで(支払用カード電磁的記録不正作出等、不正電磁的記録カード所持、支払用カード電磁的記録不正作出準備、未遂罪)の罪
- 八 第六十四条から第六十六条まで(御璽偽造及び不正使用等、公印偽造及び不正使用等、公記号偽造及び不正使用等)の罪並びに第六十四条第二項、第六十五条第二項及び第六十六条第二項の罪の未遂罪

(国民の国外犯)

**第三条** この法律は、日本国外において次に掲げる罪を犯した日本国民に適用する。

- 一 第百八条(現住建造物等放火) 及び第百九条第一項(非現住建造物等放火) の罪、これらの規定の例により処断すべき罪並びにこれらの罪の未遂罪
- 二 第百十九条(現住建造物等浸害) の罪
- 三 第百五十九条から第百六十一条まで(私文書偽造等、虚偽診断書等作成、偽造私文書等行使) 及び前条第五号に規定する電磁的記録以外の電磁的記録に係る第百六十一条の二の罪
- 四 第百六十七条(私印偽造及び不正使用等) の罪及び同条第二項の罪の未遂罪
- 五 第百七十六条から第百七十九条まで(強制わいせつ、強姦、準強制わいせつ及び準強姦、集団強姦等、未遂罪)、第百八十一条(強制わいせつ等致死傷) 及び第百八十四条(重婚) の罪
- 六 第百九十九条(殺人) の罪及びその未遂罪
- 七 第二百四条(傷害) 及び第二百五条(傷害致死) の罪
- 八 第二百四条から第二百六条まで(業務上墮胎及び同致死傷、不同意墮胎、不同意墮胎致死傷) の罪
- 九 第二百十八条(保護責任者遺棄等) の罪及び同条の罪に係る第二百十九条(遺棄等致死傷) の罪
- 十 第二百二十条(逮捕及び監禁) 及び第二百二十一条(逮捕等致死傷) の罪

- 十一 第二百二十四条から第二百二十八条まで(未成年者略取及び誘拐、営利目的等略取及び誘拐、身の代金目的略取等、所在国外移送目的略取及び誘拐、人身売買、被略取者等所在国外移送、被略取者引渡し等、未遂罪) の罪
- 十二 第二百三十条(名誉毀損) の罪
- 十三 第二百三十五条から第二百三十六条まで(窃盗、不動産侵奪、強盗)、第二百三十八条から第二百四十一条まで(事後強盗、昏酔強盗、強盗致死傷、強盗強姦及び同致死) 及び第二百四十三条(未遂罪) の罪
- 十四 第二百四十六条から第二百五十条まで(詐欺、電子計算機使用詐欺、背任、準詐欺、恐喝、未遂罪) の罪
- 十五 第二百五十三条(業務上横領) の罪
- 十六 第二百五十六条第二項(盗品譲受け等) の罪

### (国民以外の者の国外犯)

**第三条の二** この法律は、日本国外において日本国民に対して次に掲げる罪を犯した日本国民以外の者に適用する。

- 一 第七十六条から第七十九条まで(強制わいせつ、強姦、準強制わいせつ及び準強姦、集団強姦等、未遂罪) 及び第八十一条(強制わいせつ等致死傷) の罪
- 二 第九十九条(殺人) の罪及びその未遂罪
- 三 第二百四条(傷害) 及び第二百五条(傷害致死) の罪
- 四 第二百二十条(逮捕及び監禁) 及び第二百二十一条(逮捕等致死傷) の罪

- 五 第二百二十四条から第二百二十八条まで(未成年者略取及び誘拐、營利目的等略取及び誘拐、身の代金目的略取等、所在国外移送目的略取及び誘拐、人身売買、被略取者等所在国外移送、被略取者引渡し等、未遂罪) の罪
- 六 第二百三十六条(強盜) 及び第二百三十八条から第二百四十一条まで(事後強盜、昏酔強盜、強盜致死傷、強盜強姦及び同致死) の罪並びにこれらの罪の未遂罪

### (公務員の国外犯)

**第四条** この法律は、日本国外において次に掲げる罪を犯した日本国の公務員に適用する。

- 一 第一百一条(看守者等による逃走援助) の罪及びその未遂罪
- 二 第一百五十六条(虚偽公文書作成等) の罪
- 三 第一百九十三条(公務員職権濫用)、第一百九十五条第二項(特別公務員暴行陵虐) 及び第一百九十七条から第一百九十七条の四まで(収賄、受託収賄及び事前収賄、第三者供賄、加重収賄及び事後収賄、あっせん収賄) の罪並びに第一百九十五条第二項の罪に係る第一百九十六条(特別公務員職権濫用等致死傷) の罪

### (条約による国外犯)

**第四条の二** 第二条から前条まで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は、日本国外において、第二編の罪であって条約により日本国外において犯したときであっても罰すべきものとされているものを犯したすべての者に適用する。

### (外国判決の効力)

**第五条** 外国において確定裁判を受けた者であっても、同一の行為について更に処罰することを妨げない。ただし、犯人が既に外国において言い渡された刑の全部又は一部の執行を受けたときは、刑の執行を減輕し、又は免除する。

### (刑の変更)

**第六条** 犯罪後の法律によって刑の変更があったときは、その軽いものによる。

### (定義)

**第七条** この法律において「公務員」とは、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職員その他法令により公務に従事する議員、委員その他の職員をいう。

2 この法律において「公務所」とは、官公庁その他公務員が職務を行う所をいう。

**第七条の二** この法律において「電磁的記録」とは、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の他の知覚によっ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録であっ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をいう。

### (他の法令の罪に対する適用)

**第八条** この編の規定は、他の法令の罪についても、適用する。ただし、その法令に特別の規定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第二章 刑

### (刑の種類)

**第九条** 死刑、懲役、禁錮、罰金、拘留及び科料を主刑とし、没収を付加刑とする。

### (刑の軽重)

**第十条** 主刑の軽重は、前条に規定する順序による。ただし、無期の禁錮と有期の懲役とでは禁錮を重い刑とし、有期の禁錮の長期が有期の懲役の長期の二倍を超えるときも、禁錮を重い刑とする。

2 同種の刑は、長期の長いもの又は多額の多いものを重い刑とし、長期又は多額が同じであるときは、短期の長いもの又は寡額の多いものを重い刑とする。

3 二個以上の死刑又は長期若しくは多額及び短期若しくは寡額が同じである同種の刑は、犯情によってその軽重を定める。

### (死刑)

**第十一条** 死刑は、刑事施設内において、絞首して執行する。

2 死刑の言渡しを受けた者は、その執行に至るまで刑事施設に拘置する。

### (懲役)

**第十二条** 懲役は、無期及び有期とし、有期懲役は、一月以上二十年以下とする。

2 懲役は、刑事施設に拘置して所定の作業を行わせる。

**(禁錮)**

**第十三条** 禁錮は、無期及び有期とし、有期禁錮は、一月以上二十年以下とする。

2 禁錮は、刑事施設に拘置する。

**(有期の懲役及び禁錮の加減の限度)**

**第十四条** 死刑又は無期の懲役若しくは禁錮を減輕して有期の懲役又は禁錮とする場合においては、その長期を三十年とする。

2 有期の懲役又は禁錮を加重する場合においては三十年にまで上げることができ、これを減輕する場合においては一月未満に下げることができる。

**(罰金)**

**第十五条** 罰金は、一万円以上とする。ただし、これを減輕する場合においては、一万円未満に下げることができる。

**(拘留)**

**第十六条** 拘留は、一日以上三十日未満とし、刑事施設に拘置する。

**(科料)**

**第十七条** 科料は、千円以上一万円未満とする。

**(労役場留置)**

**第十八条** 罰金を完納することができない者は、一日以上二年以下の期間、

労役場に留置する。

2 科料を完納することができない者は、一日以上三十日以下の期間、労役場に留置する。

3 罰金を併科した場合又は罰金と科料とを併科した場合における留置の期間は、三年を超えることができない。科料を併科した場合における留置の期間は、六十日を超えることができない。

4 罰金又は科料の言渡しをするときは、その言渡しとともに、罰金又は科料を完納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おける留置の期間を定めて言い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

5 罰金については裁判が確定した後三十日以内、科料については裁判が確定した後十日以内は、本人の承諾がなければ留置の執行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6 罰金又は科料の一部を納付した者についての留置の日数は、その残額を留置一日の割合に相当する金額で除して得た日数(その日数に一日未満の端数を生じるときは、これを一日とする。)とする。

## (没収)

**第十九条** 次に掲げる物は、没収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犯罪行為を組成した物
- 二 犯罪行為の用に供し、又は供しようとした物
- 三 犯罪行為によって生じ、若しくはこれによって得た物又は犯罪行為の報酬として得た物
- 四 前号に掲げる物の対価として得た物

2 没収は、犯人以外の者に属しない物に限り、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ただし、犯人以外の者に属する物であっても、犯罪の後にその者が情を知って取得したものであるときは、これを没収することができる。

#### (追徴)

**第十九条の二** 前条第一項第三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物の全部又は一部を没収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その価額を追徴することができる。

#### (没収の制限)

**第二十条** 拘留又は科料のみに当たる罪については、特別の規定がなければ、没収を科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第十九条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物の没収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 (未決勾留日数の本刑算入)

**第二十一条** 未決勾留の日数は、その全部又は一部を本刑に算入することができる。

### 第三章 期間計算

#### (期間の計算)

**第二十二条** 月又は年によって期間を定めたときは、暦に従って計算する。

#### (刑期の計算)

**第二十三条** 刑期は、裁判が確定した日から起算する。

2 拘禁されていない日数は、裁判が確定した後であっても、刑期に算入しない。

#### (受刑等の初日及び釈放)

**第二十四条** 受刑の初日は、時間にかかわらず、一日として計算する。時効期間の初日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2 刑期が終了した場合における釈放は、その終了の日の翌日に行う。

### 第四章 刑の執行猶予

#### (執行猶予)

**第二十五条** 次に掲げる者が三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禁錮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の言渡しを受けたときは、情状により、裁判が確定した日から一年以上五年以下の期間、その執行を猶予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前に禁錮以上の刑に処せられたことがない者
- 二 前に禁錮以上の刑に処せられたことがあっても、その執行を終わった日又はその執行の免除を得た日から五年以内に禁錮以上の刑に処せられたことがない者

2 前に禁錮以上の刑に処せられたことがあってもその執行を猶予された者が一年以下の懲役又は禁錮の言渡しを受け、情状に特に酌量すべきものがあるときも、前項と同様とする。ただし、次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保護観察に付せられ、その期間内に更に罪を犯した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 (保護観察)

**第二十五条の二** 前条第一項の場合においては猶予の期間中保護観察に付することができ、同条第二項の場合においては猶予の期間中保護観察に付する。

2 保護観察は、行政官庁の処分によって仮に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

3 保護観察を仮に解除されたときは、前条第二項ただし書及び第二十六条の二第二号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その処分を取り消されるまでの間は、保護観察に付せられなかったものとみなす。

### (執行猶予の必要的取消し)

**第二十六条** 次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は、刑の執行猶予の言渡し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三号の場合において、猶予の言渡しを受けた者が第二十五条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者であるとき、又は次条第三号に該当す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猶予の期間内に更に罪を犯して禁錮以上の刑に処せられ、その刑について執行猶予の言渡しがないとき。
- 二 猶予の言渡し前に犯した他の罪について禁錮以上の刑に処せられ、その刑について執行猶予の言渡しがないとき。
- 三 猶予の言渡し前に他の罪について禁錮以上の刑に処せられたことが発覚したとき。

### (執行猶予の裁量的取消し)

**第二十六条の二** 次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は、刑の執行猶予の言渡し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 一 猶予の期間内に更に罪を犯し、罰金に処せられたとき。
- 二 第二十五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保護観察に付せられた者が遵守すべき事項を遵守せず、その情状が重いとき。
- 三 猶予の言渡し前に他の罪について禁錮以上の刑に処せられ、その執行を猶予されたことが発覚したとき。

#### (他の刑の執行猶予の取消し)

**第二十六条の三** 前二条の規定により禁錮以上の刑の執行猶予の言渡しを取り消したときは、執行猶予中の他の禁錮以上の刑についても、その猶予の言渡し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 (猶予期間経過の効果)

**第二十七条** 刑の執行猶予の言渡しを取り消されることなく猶予の期間を経過したときは、刑の言渡しは、効力を失う。

### 第五章 仮釈放

#### (仮釈放)

**第二十八条** 懲役又は禁錮に処せられた者に改悛の状があるときは、有期刑についてはその刑期の三分の一を、無期刑については十年を経過した後、行政官庁の処分によって仮に釈放することができる。

#### (仮釈放の取消し)

**第二十九条** 次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は、仮釈放の処分を取り消すことが

できる。

- 一 仮釈放中に更に罪を犯し、罰金以上の刑に処せられたとき。
  - 二 仮釈放前に犯した他の罪について罰金以上の刑に処せられたとき。
  - 三 仮釈放前に他の罪について罰金以上の刑に処せられた者に対し、その刑の執行をすべきとき。
  - 四 仮釈放中に遵守すべき事項を遵守しなかったとき。
- 2 仮釈放の処分を取り消したときは、釈放中の日数は、刑期に算入しない。

#### (仮出場)

- 第三十条** 拘留に処せられた者は、情状により、いつでも、行政官庁の処分によって仮に出場を許すことができる。
- 2 罰金又は科料を完納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め留置され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

### 第六章 刑の時効及び刑の消滅

#### (刑の時効)

- 第三十一条** 刑の言渡しを受けた者は、時効によりその執行の免除を得る。

#### (時効の期間)

- 第三十二条** 時効は、刑の言渡しが確定した後、次の期間その執行を受けないことによって完成する。
- 一 死刑については三十年

- 二 無期の懲役又は禁錮については二十年
- 三 十年以上の有期の懲役又は禁錮については十五年
- 四 三年以上十年未満の懲役又は禁錮については十年
- 五 三年未満の懲役又は禁錮については五年
- 六 罰金については三年
- 七 拘留、科料及び没収については一年

### (時効の停止)

**第三十三条** 時効は、法令により執行を猶予し、又は停止した期間内は、進行しない。

### (時効の中断)

**第三十四条** 死刑、懲役、禁錮及び拘留の時効は、刑の言渡しを受けた者をその執行のために拘束することによって中断する。

2 罰金、科料及び没収の時効は、執行行為をすることによって中断する。

### (刑の消滅)

**第三十四条の二** 禁錮以上の刑の執行を終わり又はその執行の免除を得た者が罰金以上の刑に処せられないで十年を経過したときは、刑の言渡しは、効力を失う。罰金以下の刑の執行を終わり又はその執行の免除を得た者が罰金以上の刑に処せられないで五年を経過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2 刑の免除の言渡しを受けた者が、その言渡しが確定した後、罰金以上の刑に処せられないで二年を経過したときは、刑の免除の言渡しは、効力を失う。

## 第七章 犯罪の不成立及び刑の減免

### (正当行為)

**第三十五条** 法令又は正当な業務による行為は、罰しない。

### (正当防衛)

**第三十六条** 急迫不正の侵害に対して、自己又は他人の権利を防衛するため、やむを得ずにした行為は、罰しない。

2 防衛の程度を超えた行為は、情状により、その刑を減輕し、又は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

### (緊急避難)

**第三十七条** 自己又は他人の生命、身体、自由又は財産に対する現在の危険を避けるため、やむを得ずにした行為は、これによって生じた害が避けようとした害の程度を超えなかった場合に限り、罰しない。ただし、その程度を超えた行為は、情状により、その刑を減輕し、又は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は、業務上特別の義務がある者には、適用しない。

### (故意)

**第三十八条** 罪を犯す意思がない行為は、罰しない。ただし、法律に特別の規定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重い罪に当たるべき行為をしたのに、行為の時にその重い罪に当たることとなる事実を知らなかった者は、その重い罪によって処断することはできない。

3 法律を知らなかったとしても、そのことによって、罪を犯す意思がなかったとすることはできない。ただし、情状により、その刑を減輕することができる。

#### (心神喪失及び心神耗弱)

**第三十九条** 心神喪失者の行為は、罰しない。

2 心神耗弱者の行為は、その刑を減輕する。

### 第四十条 削除

#### (責任年齢)

**第四十一条** 十四歳に満たない者の行為は、罰しない。

#### (自首等)

**第四十二条** 罪を犯した者が捜査機関に発覚する前に自首したときは、その刑を減輕することができる。

2 告訴がなければ公訴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ない罪について、告訴をすることができる者に対して自己の犯罪事実を告げ、その措置にゆだねたときも、前項と同様とする。

## 第八章 未遂罪

#### (未遂減免)

**第四十三条** 犯罪の実行に着手してこれを遂げなかった者は、その刑を減

軽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自己の意思により犯罪を中止したときは、その刑を減輕し、又は免除する。

### (未遂罪)

**第四十四条** 未遂を罰する場合は、各本条で定める。

## 第九章 併合罪

### (併合罪)

**第四十五条** 確定裁判を経ていない二個以上の罪を併合罪とする。ある罪について禁錮以上の刑に処する確定裁判があったときは、その罪とその裁判が確定する前に犯した罪とに限り、併合罪とする。

### (併科の制限)

**第四十六条** 併合罪のうちの一つの罪について死刑に処するときは、他の刑を科さない。ただし、没収は、この限りでない。

2 併合罪のうちの一つの罪について無期の懲役又は禁錮に処するときも、他の刑を科さない。ただし、罰金、科料及び没収は、この限りでない。

### (有期の懲役及び禁錮の加重)

**第四十七条** 併合罪のうち二個以上の罪について有期の懲役又は禁錮に処するときは、その最も重い罪について定めた刑の長期にその二分の一を加えたものを長期とする。ただし、それぞれの罪について定めた刑の長期の合計を超えることはできない。

**(罰金の併科等)**

**第四十八条** 罰金と他の刑とは、併科する。ただし、第四十六条第一項の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併合罪のうちの二個以上の罪について罰金に処するときは、それぞれの罪について定めた罰金の多額の合計以下で処断する。

**(没収の付加)**

**第四十九条** 併合罪のうちの重い罪について没収を科さない場合であっても、他の罪について没収の事由があるときは、これを付加することができる。

2 二個以上の没収は、併科する。

**(余罪の処理)**

**第五十条** 併合罪のうちに既に確定裁判を経た罪とまだ確定裁判を経していない罪とがあるときは、確定裁判を経していない罪について更に処断する。

**(併合罪に係る二個以上の刑の執行)**

**第五十一条** 併合罪について二個以上の裁判があったときは、その刑を併せて執行する。ただし、死刑を執行すべきときは、没収を除き、他の刑を執行せず、無期の懲役又は禁錮を執行すべきときは、罰金、科料及び没収を除き、他の刑を執行しない。

2 前項の場合における有期の懲役又は禁錮の執行は、その最も重い罪について定めた刑の長期にその二分の一を加えたものを超えることができない。

(一部に大赦があった場合の措置)

**第五十二条** 併合罪について処断された者がその一部の罪につき大赦を受けたときは、他の罪について改めて刑を定める。

(拘留及び科料の併科)

**第五十三条** 拘留又は科料と他の刑とは、併科する。ただし、第四十六条の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2 二個以上の拘留又は科料は、併科する。

(一個の行為が二個以上の罪名に触れる場合等の処理)

**第五十四条** 一個の行為が二個以上の罪名に触れ、又は犯罪の手段若しくは結果である行為が他の罪名に触れるときは、その最も重い刑により処断する。

2 第四十九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場合にも、適用する。

**第五十五条** 削除

## 第十章 累犯

(再犯)

**第五十六条** 懲役に処せられた者がその執行を終わった日又はその執行の免除を得た日から五年以内に更に罪を犯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者を有期懲役に処するときは、再犯とする。

2 懲役に当たる罪と同質の罪により死刑に処せられた者がその執行の

免除を得た日又は減刑により懲役に減輕されてその執行を終わった日若しくはその執行の免除を得た日から五年以内に更に罪を犯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者を有期懲役に処するときも、前項と同様とする。

3 併合罪について処断された者が、その併合罪のうちに懲役に処すべき罪があったのに、その罪が最も重い罪でなかったため懲役に処せられなかったものであるときは、再犯に関する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懲役に処せられたものとみなす。

#### (再犯加重)

**第五十七条** 再犯の刑は、その罪について定めた懲役の長期の二倍以下とする。

**第五十八条** 削除

#### (三犯以上の累犯)

**第五十九条** 三犯以上の者についても、再犯の例による。

### 第十一章 共犯

#### (共同正犯)

**第六十条** 二人以上共同して犯罪を実行した者は、すべて正犯とする。

#### (教唆)

**第六十一条** 人を教唆して犯罪を実行させた者には、正犯の刑を科する。

2 教唆者を教唆した者についても、前項と同様とする。

(幫助)

第六十二条 正犯を幫助した者は、従犯とする。

2 従犯を教唆した者には、従犯の刑を科する。

(従犯減輕)

第六十三条 従犯の刑は、正犯の刑を減輕する。

(教唆及び幫助の処罰の制限)

第六十四条 拘留又は科料のみに処すべき罪の教唆者及び従犯は、特別の規定がなければ、罰しない。

(身分犯の共犯)

第六十五条 犯人の身分によって構成すべき犯罪行為に加功したときは、身分のない者であっても、共犯とする。

2 身分によって特に刑の輕重があるときは、身分のない者には通常の刑を科する。

## 第十二章 酌量減輕

(酌量減輕)

第六十六条 犯罪の情状に酌量すべきものがあるときは、その刑を減輕することができる。

(法律上の加減と酌量減輕)

第六十七条 法律上刑を加重し、又は減輕する場合であっても、酌量減輕をすることができる。

### 第十三章 加重減輕の方法

#### (法律上の減輕の方法)

**第六十八条** 法律上刑を減輕すべき一個又は二個以上の事由があるときは、次の例による。

- 一 死刑を減輕するときは、無期の懲役若しくは禁錮又は十年以上の懲役若しくは禁錮とする。
- 二 無期の懲役又は禁錮を減輕するときは、七年以上の有期の懲役又は禁錮とする。
- 三 有期の懲役又は禁錮を減輕するときは、その長期及び短期の二分の一を減ずる。
- 四 罰金を減輕するときは、その多額及び寡額の二分の一を減ずる。
- 五 拘留を減輕するときは、その長期の二分の一を減ずる。
- 六 科料を減輕するときは、その多額の二分の一を減ずる。

#### (法律上の減輕と刑の選択)

**第六十九条** 法律上刑を減輕すべき場合において、各本条に二個以上の刑名があるときは、まず適用する刑を定めて、その刑を減輕する。

#### (端数の切捨て)

**第七十条** 懲役、禁錮又は拘留を減輕することにより一日に満たない端数が生じたときは、これを切り捨てる。

#### (酌量減輕の方法)

**第七十一条** 酌量減輕をするときも、第六十八条及び前条の例による。

(加重減軽の順序)

第七十二条 同時に刑を加重し、又は減軽するときは、次の順序による。

- 一 再犯加重
- 二 法律上の減軽
- 三 併合罪の加重
- 四 酌量減軽

## 第二編 罪

### 第一章 削除

第七十三条 削除

第七十四条 削除

第七十五条 削除

第七十六条 削除

### 第二章 内乱に関する罪

(内乱)

第七十七条 国の統治機構を破壊し、又はその領土において国権を排除して権力を行使し、その他憲法の定める統治の基本秩序を壊乱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暴動をした者は、内乱の罪とし、次の区別に従って処断する。

- 一 首謀者は、死刑又は無期禁錮に処する。

二 謀議に参与し、又は群衆を指揮した者は無期又は三年以上の禁錮に処し、その他諸般の職務に従事した者は一年以上十年以下の禁錮に処する。

三 付和随行し、その他単に暴動に参加した者は、三年以下の禁錮に処する。

2 前項の罪の未遂は、罰する。ただし、同項第三号に規定する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 (予備及び陰謀)

**第七十八条** 内乱の予備又は陰謀をした者は、一年以上十年以下の禁錮に処する。

#### (内乱等幫助)

**第七十九条** 兵器、資金若しくは食糧を供給し、又はその他の行為により、前二条の罪を幫助した者は、七年以下の禁錮に処する。

#### (自首による刑の免除)

**第八十条** 前二条の罪を犯した者であっても、暴動に至る前に自首したときは、その刑を免除する。

### 第三章 外患に関する罪

#### (外患誘致)

**第八十一条** 外国と通謀して日本国に対し武力を行使させた者は、死刑に処する。

(外患援助)

第八十二条 日本国に対して外国から武力の行使があったときに、これに加担して、その軍務に服し、その他これに軍事上の利益を与えた者は、死刑又は無期若しくは二年以上の懲役に処する。

第八十三条 削除

第八十四条 削除

第八十五条 削除

第八十六条 削除

(未遂罪)

第八十七条 第八十一条及び第八十二条の罪の未遂は、罰する。

(予備及び陰謀)

第八十八条 第八十一条又は第八十二条の罪の予備又は陰謀をした者は、一年以上十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第八十九条 削除

## 第四章 国交に関する罪

第九十条 削除

第九十一条 削除

**(外国国章損壊等)**

**第九十二条** 外国に対して侮辱を加える目的で、その国の国旗その他の国章を損壊し、除去し、又は汚損し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又は二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2 前項の罪は、外国政府の請求がなければ公訴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ない。

**(私戦予備及び陰謀)**

**第九十三条** 外国に対して私的に戦闘行為をする目的で、その予備又は陰謀をした者は、三月以上五年以下の禁錮に処する。ただし、自首した者は、その刑を免除する。

**(中立命令違反)**

**第九十四条** 外国が交戦している際に、局外中立に関する命令に違反した者は、三年以下の禁錮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第五章 公務の執行を妨害する罪**

**(公務執行妨害及び職務強要)**

**第九十五条** 公務員が職務を執行するに当たり、これに対して暴行又は脅迫を加えた者は、三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禁錮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2 公務員に、ある処分をさせ、若しくはさせないため、又はその職を辞させるために、暴行又は脅迫を加え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

(封印等破棄)

**第九十六条** 公務員が施した封印若しくは差押えの表示を損壊し、又はその他の方法で無効にし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又は二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強制執行妨害)

**第九十六条の二** 強制執行を免れる目的で、財産を隠匿し、損壊し、若しくは仮装譲渡し、又は仮装の債務を負担し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競売等妨害)

**第九十六条の三** 偽計又は威力を用いて、公の競売又は入札の公正を害すべき行為をし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又は二百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2 公正な価格を害し又は不正な利益を得る目的で、談合し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

## 第六章 逃走の罪

(逃走)

**第九十七条** 裁判の執行により拘禁された既決又は未決の者が逃走したときは、一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加重逃走)

**第九十八条** 前条に規定する者又は勾引状の執行を受けた者が拘禁場若し

くは拘束のための器具を損壊し、暴行若しくは脅迫をし、又は二人以上通謀して、逃走したときは、三月以上五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 (被拘禁者奪取)

**第九十九条** 法令により拘禁された者を奪取した者は、三月以上五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 (逃走援助)

**第一百条** 法令により拘禁された者を逃走させる目的で、器具を提供し、その他逃走を容易にすべき行為をした者は、三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2 前項の目的で、暴行又は脅迫をした者は、三月以上五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 (看守者等による逃走援助)

**第一百一条** 法令により拘禁された者を看守し又は護送する者がその拘禁された者を逃走させたときは、一年以上十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 (未遂罪)

**第一百二条** この章の罪の未遂は、罰する。

### 第七章 犯人蔵匿及び証拠隠滅の罪

#### (犯人蔵匿等)

**第一百三条** 罰金以上の刑に当たる罪を犯した者又は拘禁中に逃走した者を

蔵匿し、又は隠避させ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又は二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証拠隠滅等)

**第四百条** 他人の刑事事件に関する証拠を隠滅し、偽造し、若しくは変造し、又は偽造若しくは変造の証拠を使用し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又は二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親族による犯罪に関する特例)

**第四百五条** 前二条の罪については、犯人又は逃走した者の親族がこれらの者の利益のために犯したときは、その刑を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

#### (証人等威迫)

**第四百五条の二** 自己若しくは他人の刑事事件の捜査若しくは審判に必要な知識を有すると認められる者又はその親族に対し、当該事件に関して、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面会を強請し、又は強談威迫の行為をした者は、一年以下の懲役又は二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第八章 騒乱の罪

#### (騒乱)

**第四百六条** 多衆で集合して暴行又は脅迫をした者は、騒乱の罪とし、次の区別に従って処断する。

一 首謀者は、一年以上十年以下の懲役又は禁錮に処する。

- 二 他人を指揮し、又は他人に率先して勢いを助けた者は、六月以上七年以下の懲役又は禁錮に処する。
- 三 付和随行した者は、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多衆不解散)**

**第一百七条** 暴行又は脅迫をするため多衆が集合した場合において、権限のある公務員から解散の命令を三回以上受けたにもかかわらず、なお解散しなかったときは、首謀者は三年以下の懲役又は禁錮に処し、その他の者は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第九章 放火及び失火の罪

**(現住建造物等放火)**

**第一百八条** 放火して、現に人が住居に使用し又は現に人がいる建造物、汽車、電車、艦船又は鉱坑を焼損した者は、死刑又は無期若しくは五年以上の懲役に処する。

**(非現住建造物等放火)**

**第一百九条** 放火して、現に人が住居に使用せず、かつ、現に人がいない建造物、艦船又は鉱坑を焼損した者は、二年以上の有期徒刑に処する。

- 2 前項の物が自己の所有に係るときは、六月以上七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ただし、公共の危険を生じなかったときは、罰しない。

**(建造物等以外放火)**

**第百十条** 放火して、前二条に規定する物以外の物を焼損し、よって公共の危険を生じさせた者は、一年以上十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2 前項の物が自己の所有に係るときは、一年以下の懲役又は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延焼)**

**第百十一条** 第百九条第二項又は前条第二項の罪を犯し、よって第百八条又は第百九条第一項に規定する物に延焼させたときは、三月以上十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2 前条第二項の罪を犯し、よって同条第一項に規定する物に延焼させたときは、三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未遂罪)**

**第百十二条** 第百八条及び第百九条第一項の罪の未遂は、罰する。

**(予備)**

**第百十三条** 第百八条又は第百九条第一項の罪を犯す目的で、その予備をし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ただし、情状により、その刑を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

**(消火妨害)**

**第百十四条** 火災の際に、消火用の物を隠匿し、若しくは損壊し、又はその他の方法により、消火を妨害した者は、一年以上十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差押え等に係る自己の物に関する特例)**

**第百十五条** 第百九条第一項及び第百十条第一項に規定する物が自己の所有に係るものであっても、差押えを受け、物権を負担し、賃貸し、又は保険に付したものである場合において、これを焼損したときは、他人の物を焼損した者の例による。

**(失火)**

**第百十六条** 失火により、第百八条に規定する物又は他人の所有に係る第百九条に規定する物を焼損した者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2 失火により、第百九条に規定する物であって自己の所有に係るもの又は第百十条に規定する物を焼損し、よって公共の危険を生じさせ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

**(激発物破裂)**

**第百十七条** 火薬、ボイラーその他の激発すべき物を破裂させて、第百八条に規定する物又は他人の所有に係る第百九条に規定する物を損壊した者は、放火の例による。第百九条に規定する物であって自己の所有に係るもの又は第百十条に規定する物を損壊し、よって公共の危険を生じさせた者も、同様とする。

2 前項の行為が過失によるときは、失火の例による。

**(業務上失火等)**

**第百十七条の二** 第百十六条又は前条第一項の行為が業務上必要な注意を

怠ったことによるとき、又は重大な過失によるときは、三年以下の禁錮又は百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ガス漏出等及び同致死傷)

**第百十八条** ガス、電気又は蒸気を漏出させ、流出させ、又は遮断し、よって人の生命、身体又は財産に危険を生じさせた者は、三年以下の懲役又は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2 ガス、電気又は蒸気を漏出させ、流出させ、又は遮断し、よって人を死傷させた者は、傷害の罪と比較して、重い刑により処断する。

### 第十章 出水及び水利に関する罪

#### (現住建造物等浸害)

**第百十九条** 出水させて、現に人が住居に使用し又は現に人がいる建造物、汽車、電車又は鉱坑を浸害した者は、死刑又は無期若しくは三年以上の懲役に処する。

#### (非現住建造物等浸害)

**第二百十条** 出水させて、前条に規定する物以外の物を浸害し、よって公共の危険を生じさせた者は、一年以上十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2 浸害した物が自己の所有に係るときは、その物が差押えを受け、物権を負担し、賃貸し、又は保険に付したものである場合に限り、前項の例による。

**(水防妨害)**

**第二百二十一条** 水害の際に、水防用の物を隠匿し、若しくは損壊し、又はその他の方法により、水防を妨害した者は、一年以上十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過失建造物等浸害)**

**第二百二十二条** 過失により出水させて、第百十九条に規定する物を浸害した者又は第百二十条に規定する物を浸害し、よって公共の危険を生じさせた者は、二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水利妨害及び出水危険)**

**第二百二十三条** 堤防を決壊させ、水門を破壊し、その他水利の妨害となるべき行為又は出水させるべき行為をし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禁錮又は二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第十一章 往来を妨害する罪**

**(往来妨害及び同致死傷)**

**第二百二十四条** 陸路、水路又は橋を損壊し、又は閉塞して往来の妨害を生じさせ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又は二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2 前項の罪を犯し、よって人を死傷させた者は、傷害の罪と比較して、重い刑により処断する。

(往来危険)

**第二百二十五条** 鉄道若しくはその標識を損壊し、又はその他の方法により、汽車又は電車の往来の危険を生じさせた者は、二年以上の有期懲役に処する。

2 灯台若しくは浮標を損壊し、又はその他の方法により、艦船の往来の危険を生じさせ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

(汽車転覆等及び同致死)

**第二百二十六条** 現に人がいる汽車又は電車を転覆させ、又は破壊した者は、無期又は三年以上の懲役に処する。

2 現に人がいる艦船を転覆させ、沈没させ、又は破壊し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

3 前二項の罪を犯し、よって人を死亡させた者は、死刑又は無期懲役に処する。

(往来危険による汽車転覆等)

**第二百二十七条** 第二百二十五条の罪を犯し、よって汽車若しくは電車を転覆させ、若しくは破壊し、又は艦船を転覆させ、沈没させ、若しくは破壊した者も、前条の例による。

(未遂罪)

**第二百二十八条** 第二百二十四条第一項、第二百二十五条並びに第二百二十六条第一項及び第二項の罪の未遂は、罰する。

(過失往来危険)

**第二百二十九条** 過失により、汽車、電車若しくは艦船の往来の危険を生じさせ、又は汽車若しくは電車を転覆させ、若しくは破壊し、若しくは艦船を転覆させ、沈没させ、若しくは破壊した者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2 その業務に従事する者が前項の罪を犯したときは、三年以下の禁錮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第十二章 住居を侵す罪

(住居侵入等)

**第三百十条** 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人の住居若しくは人の看守する邸宅、建造物若しくは艦船に侵入し、又は要求を受けたにもかかわらずこれらの場所から退去しなかった者は、三年以下の懲役又は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第三百十一条** 削除

(未遂罪)

**第三百十二条** 第三百十条の罪の未遂は、罰する。

## 第十三章 秘密を侵す罪

(信書開封)

**第三百十三条** 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封をしてある信書を開けた者は、一年以下の懲役又は二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秘密漏示)

**第百三十四条** 医師、薬剤師、医薬品販売業者、助産師、弁護士、弁護士、公証人又はこれらの職にあった者が、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その業務上取り扱ったことについて知り得た人の秘密を漏らしたときは、六月以下の懲役又は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2 宗教、祈祷若しくは祭祀の職にある者又はこれらの職にあった者が、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その業務上取り扱ったことについて知り得た人の秘密を漏らしたときも、前項と同様とする。

(親告罪)

**第百三十五条** この章の罪は、告訴がなければ公訴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ない。

## 第十四章 あへん煙に関する罪

(あへん煙輸入等)

**第百三十六條** あへん煙を輸入し、製造し、販売し、又は販売の目的で所持した者は、六月以上七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あへん煙吸食器具輸入等)

**第百三十七條** あへん煙を吸食する器具を輸入し、製造し、販売し、又は販売の目的で所持した者は、三月以上五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税関職員によるあへん煙輸入等)

第百三十八条 税関職員が、あへん煙又はあへん煙を吸食するための器具を輸入し、又はこれらの輸入を許したときは、一年以上十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あへん煙吸食及び場所提供)

第百三十九条 あへん煙を吸食した者は、三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2 あへん煙の吸食のため建物又は室を提供して利益を図った者は、六月以上七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あへん煙等所持)

第百四十条 あへん煙又はあへん煙を吸食するための器具を所持した者は、一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未遂罪)

第百四十一条 この章の罪の未遂は、罰する。

## 第十五章 飲料水に関する罪

(浄水汚染)

第百四十二条 人の飲料に供する浄水を汚染し、よって使用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した者は、六月以下の懲役又は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水道汚染)

**第一百四十三条** 水道により公衆に供給する飲料の浄水又はその水源を汚染し、よって使用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した者は、六月以上七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浄水毒物等混入)

**第一百四十四条** 人の飲料に供する浄水に毒物その他の健康を害すべき物を混入した者は、三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浄水汚染等致死傷)

**第一百四十五条** 前三条の罪を犯し、よって人を死傷させた者は、傷害の罪と比較して、重い刑により処断する。

(水道毒物等混入及び同致死)

**第一百四十六条** 水道により公衆に供給する飲料の浄水又はその水源に毒物その他の健康を害すべき物を混入した者は、二年以上の有期懲役に処する。よって人を死亡させた者は、死刑又は無期若しくは五年以上の懲役に処する。

(水道損壊及び閉塞)

**第一百四十七条** 公衆の飲料に供する浄水の水道を損壊し、又は閉塞した者は、一年以上十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 第十六章 通貨偽造の罪

### (通貨偽造及び行使等)

**第一百四十八条** 行使の目的で、通用する貨幣、紙幣又は銀行券を偽造し、又は変造した者は、無期又は三年以上の懲役に処する。

2 偽造又は変造の貨幣、紙幣又は銀行券を行使し、又は行使の目的で人に交付し、若しくは輸入し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

### (外国通貨偽造及び行使等)

**第一百四十九条** 行使の目的で、日本国内に流通している外国の貨幣、紙幣又は銀行券を偽造し、又は変造した者は、二年以上の有期懲役に処する。

2 偽造又は変造の外国の貨幣、紙幣又は銀行券を行使し、又は行使の目的で人に交付し、若しくは輸入し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

### (偽造通貨等収得)

**第一百五十条** 行使の目的で、偽造又は変造の貨幣、紙幣又は銀行券を収得した者は、三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 (未遂罪)

**第一百五十一条** 前三条の罪の未遂は、罰する。

### (収得後知情行使等)

**第一百五十二条** 貨幣、紙幣又は銀行券を収得した後に、それが偽造又は変造のものであることを知って、これを行行使し、又は行使の目的で人に交

付した者は、その額面価格の三倍以下の罰金又は科料に処する。ただし、二千円以下にすることはできない。

### (通貨偽造等準備)

**第一百五十三条** 貨幣、紙幣又は銀行券の偽造又は変造の用に供する目的で、器械又は原料を準備した者は、三月以上五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 第十七章 文書偽造の罪

### (詔書偽造等)

**第一百五十四条** 行使の目的で、御璽、国璽若しくは御名を使用して詔書その他の文書を偽造し、又は偽造した御璽、国璽若しくは御名を使用して詔書その他の文書を偽造した者は、無期又は三年以上の懲役に処する。

2 御璽若しくは国璽を押し又は御名を署した詔書その他の文書を変造し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

### (公文書偽造等)

**第一百五十五条** 行使の目的で、公務所若しくは公務員の印章若しくは署名を使用して公務所若しくは公務員の作成すべき文書若しくは図画を偽造し、又は偽造した公務所若しくは公務員の印章若しくは署名を使用して公務所若しくは公務員の作成すべき文書若しくは図画を偽造した者は、一年以上十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2 公務所又は公務員が押印し又は署名した文書又は図画を変造し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

3 前二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公務所若しくは公務員の作成すべき文書若しくは図画を偽造し、又は公務所若しくは公務員が作成した文書若しくは図画を変造した者は、三年以下の懲役又は二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虚偽公文書作成等)**

**第一百五十六条** 公務員が、その職務に関し、行使の目的で、虚偽の文書若しくは図画を作成し、又は文書若しくは図画を変造したときは、印章又は署名の有無により区別して、前二条の例による。

**(公正証書原本不実記載等)**

**第一百五十七条** 公務員に対し虚偽の申立てをして、登記簿、戸籍簿その他の権利若しくは義務に関する公正証書の原本に不実の記載をさせ、又は権利若しくは義務に関する公正証書の原本として用いられる電磁的記録に不実の記録をさせた者は、五年以下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2 公務員に対し虚偽の申立てをして、免状、鑑札又は旅券に不実の記載をさせた者は、一年以下の懲役又は二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3 前二項の罪の未遂は、罰する。

**(偽造公文書行使等)**

**第一百五十八条** 第一百五十四条から前条までの文書若しくは図画を行使し、又は前条第一項の電磁的記録を公正証書の原本としての用に供した者

は、その文書若しくは図画を偽造し、若しくは変造し、虚偽の文書若しくは図画を作成し、又は不実の記載若しくは記録をさせた者と同一の刑に処する。

2 前項の罪の未遂は、罰する。

### (私文書偽造等)

**第一百五十九条** 行使の目的で、他人の印章若しくは署名を使用して権利、義務若しくは事実証明に関する文書若しくは図画を偽造し、又は偽造した他人の印章若しくは署名を使用して権利、義務若しくは事実証明に関する文書若しくは図画を偽造した者は、三月以上五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2 他人が押印し又は署名した権利、義務又は事実証明に関する文書又は図画を変造し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

3 前二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権利、義務又は事実証明に関する文書又は図画を偽造し、又は変造した者は、一年以下の懲役又は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虚偽診断書等作成)

**第一百六十条** 医師が公務所に提出すべき診断書、検案書又は死亡証書に虚偽の記載をしたときは、三年以下の禁錮又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偽造私文書等行使)

**第一百六十一条** 前二条の文書又は図画を行使した者は、その文書若しくは図画を偽造し、若しくは変造し、又は虚偽の記載をした者と同一の刑に

処する。

2 前項の罪の未遂は、罰する。

### (電磁的記録不正作出及び供用)

**第百六十一条の二** 人の事務処理を誤らせる目的で、その事務処理の用に供する権利、義務又は事実証明に関する電磁的記録を不正に作った者は、五年以下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2 前項の罪が公務所又は公務員により作られるべき電磁的記録に係るときは、十年以下の懲役又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3 不正に作られた権利、義務又は事実証明に関する電磁的記録を、第一項の目的で、人の事務処理の用に供した者は、その電磁的記録を不正に作った者と同じの刑に処する。

4 前項の罪の未遂は、罰する。

## 第十八章 有価証券偽造の罪

### (有価証券偽造等)

**第百六十二条** 行使の目的で、公債証書、官庁の証券、会社の株券その他の有価証券を偽造し、又は変造した者は、三月以上十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2 行使の目的で、有価証券に虚偽の記入をし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

### (偽造有価証券行使等)

**第百六十三条** 偽造若しくは変造の有価証券又は虚偽の記入がある有価証

券を行使し、又は行使の目的で人に交付し、若しくは輸入した者は、三月以上十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2 前項の罪の未遂は、罰する。

## 第十八章の二 支払用カード電磁的記録に関する罪

### (支払用カード電磁的記録不正作出等)

**第六百六十三条の二** 人の財産上の事務処理を誤らせる目的で、その事務処理の用に供する電磁的記録であって、クレジットカードその他の代金又は料金の支払用のカードを構成するものを不正に作った者は、十年以下の懲役又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預貯金の引出用のカードを構成する電磁的記録を不正に作った者も、同様とする。

2 不正に作られた前項の電磁的記録を、同項の目的で、人の財産上の事務処理の用に供した者も、同項と同様とする。

3 不正に作られた第一項の電磁的記録をその構成部分とするカードを、同項の目的で、譲り渡し、貸し渡し、又は輸入した者も、同項と同様とする。

### (不正電磁的記録カード所持)

**第六百六十三条の三** 前条第一項の目的で、同条第三項のカードを所持した者は、五年以下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支払用カード電磁的記録不正作出準備)

**第六百六十三条の四** 第六百六十三条の二第一項の犯罪行為の用に供する目的

で、同項の電磁的記録の情報を取得した者は、三年以下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情を知って、その情報を提供した者も、同様とする。

2 不正に取得された第百六十三条の二第一項の電磁的記録の情報を、前項の目的で保管した者も、同項と同様とする。

3 第一項の目的で、器械又は原料を準備した者も、同項と同様とする。

### (未遂罪)

**第百六十三条の五** 第百六十三条の二及び前条第一項の罪の未遂は、罰する。

## 第十九章 印章偽造の罪

### (御璽偽造及び不正使用等)

**第百六十四条** 行使の目的で、御璽、国璽又は御名を偽造した者は、二年以上の有期懲役に処する。

2 御璽、国璽若しくは御名を不正に使用し、又は偽造した御璽、国璽若しくは御名を使用し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

### (公印偽造及び不正使用等)

**第百六十五条** 行使の目的で、公務所又は公務員の印章又は署名を偽造した者は、三月以上五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2 公務所若しくは公務員の印章若しくは署名を不正に使用し、又は偽造した公務所若しくは公務員の印章若しくは署名を使用し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

(公記号偽造及び不正使用等)

**第百六十六条** 行使の目的で、公務所の記号を偽造した者は、三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2 公務所の記号を不正に使用し、又は偽造した公務所の記号を使用し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

(私印偽造及び不正使用等)

**第百六十七条** 行使の目的で、他人の印章又は署名を偽造した者は、三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2 他人の印章若しくは署名を不正に使用し、又は偽造した印章若しくは署名を使用し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

(未遂罪)

**第百六十八条** 第百六十四条第二項、第百六十五条第二項、第百六十六条第二項及び前条第二項の罪の未遂は、罰する。

## 第二十章 偽証の罪

(偽証)

**第百六十九条** 法律により宣誓した証人が虚偽の陳述をしたときは、三月以上十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自白による刑の減免)

**第百七十条** 前条の罪を犯した者が、その証言をした事件について、その

裁判が確定する前又は懲戒処分が行われる前に自白したときは、その刑を減輕し、又は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

(虚偽鑑定等)

第一百七十一条 法律により宣誓した鑑定人、通訳人又は翻訳人が虚偽の鑑定、通訳又は翻訳をしたときは、前二条の例による。

## 第二十一章 虚偽告訴の罪

(虚偽告訴等)

第一百七十二条 人に刑事又は懲戒の処分を受けさせる目的で、虚偽の告訴、告発その他の申告をした者は、三月以上十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自白による刑の減免)

第一百七十三条 前条の罪を犯した者が、その申告をした事件について、その裁判が確定する前又は懲戒処分が行われる前に自白したときは、その刑を減輕し、又は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

## 第二十二章 わいせつ、姦淫及び重婚の罪

(公然わいせつ)

第一百七十四条 公然とわいせつな行為をした者は、六月以下の懲役若しく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又は拘留若しくは科料に処する。

(わいせつ物頒布等)

**第一百七十五条** わいせつな文書、図画その他の物を頒布し、販売し、又は公然と陳列し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又は二百五十万円以下の罰金若しくは科料に処する。販売の目的でこれらの物を所持した者も、同様とする。

(強制わいせつ)

**第一百七十六条** 十三歳以上の男女に対し、暴行又は脅迫を用いてわいせつな行為をした者は、六月以上十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十三歳未満の男女に対し、わいせつな行為をした者も、同様とする。

(強姦)

**第一百七十七条** 暴行又は脅迫を用いて十三歳以上の女子を姦淫した者は、強姦の罪とし、三年以上の有期懲役に処する。十三歳未満の女子を姦淫した者も、同様とする。

(準強制わいせつ及び準強姦)

**第一百七十八条** 人の心神喪失若しくは抗拒不能に乘じ、又は心神を喪失させ、若しくは抗拒不能にさせて、わいせつな行為をした者は、第一百七十六条の例による。

2 女子の心神喪失若しくは抗拒不能に乘じ、又は心神を喪失させ、若しくは抗拒不能にさせて、姦淫した者は、前条の例による。

(集団強姦等)

**第一百七十八条の二** 二人以上の者が現場において共同して第一百七十七条又は前条第二項の罪を犯したときは、四年以上の有期懲役に処する。

**(未遂罪)**

**第一百七十九条** 第一百七十六条から前条までの罪の未遂は、罰する。

**(親告罪)**

**第一百八十条** 第一百七十六条から第一百七十八条までの罪及びこれらの罪の未遂罪は、告訴がなければ公訴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前項の規定は、二人以上の者が現場において共同して犯した第一百七十六条若しくは第一百七十八条第一項の罪又はこれらの罪の未遂罪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強制わいせつ等致死傷)**

**第一百八十一条** 第一百七十六条若しくは第一百七十八条第一項の罪又はこれらの罪の未遂罪を犯し、よって人を死傷させた者は、無期又は三年以上の懲役に処する。

2 第一百七十七条若しくは第一百七十八条第二項の罪又はこれらの罪の未遂罪を犯し、よって女子を死傷させた者は、無期又は五年以上の懲役に処する。

3 第一百七十八条の二の罪又はその未遂罪を犯し、よって女子を死傷させた者は、無期又は六年以上の懲役に処する。

**(淫行勧誘)**

**第一百八十二条** 営利の目的で、淫行の常習のない女子を勧誘して姦淫させた者は、三年以下の懲役又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第百八十三条 削除

### (重婚)

第百八十四条 配偶者のある者が重ねて婚姻をしたときは、二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その相手方となって婚姻をした者も、同様とする。

## 第二十三章 賭博及び富くじに関する罪

### (賭博)

第百八十五条 賭博をした者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又は科料に処する。  
ただし、一時の娯楽に供する物を賭けたにとどま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 (常習賭博及び賭博場開張等図利)

第百八十六条 常習として賭博をした者は、三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2 賭博場を開張し、又は博徒を結合して利益を図った者は、三月以上五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 (富くじ発売等)

第百八十七条 富くじを発売し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又は百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2 富くじ発売の取次ぎをした者は、一年以下の懲役又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3 前二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富くじを授受した者は、二十万円以下の罰金又は科料に処する。

## 第二十四章 礼拝所及び墳墓に関する罪

### (礼拝所不敬及び説教等妨害)

**第百八十八条** 神祠、仏堂、墓所その他の礼拝所に対し、公然と不敬な行為をした者は、六月以下の懲役若しくは禁錮又は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2 説教、礼拝又は葬式を妨害した者は、一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禁錮又は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墳墓発掘)

**第百八十九条** 墳墓を発掘し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 (死体損壊等)

**第百九十条** 死体、遺骨、遺髪又は棺に納めてある物を損壊し、遺棄し、又は領得した者は、三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 (墳墓発掘死体損壊等)

**第百九十一条** 第百八十九条の罪を犯して、死体、遺骨、遺髪又は棺に納めてある物を損壊し、遺棄し、又は領得した者は、三月以上五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 (変死者密葬)

**第百九十二条** 検視を経ないで変死者を葬った者は、十万円以下の罰金又は科料に処する。

## 第二十五章 汚職の罪

### (公務員職権濫用)

**第百九十三条** 公務員がその職権を濫用して、人に義務のないことを行わせ、又は権利の行使を妨害したときは、二年以下の懲役又は禁錮に処する。

### (特別公務員職権濫用)

**第百九十四条** 裁判、検察若しくは警察の職務を行う者又はこれらの職務を補助する者がその職権を濫用して、人を逮捕し、又は監禁したときは、六月以上十年以下の懲役又は禁錮に処する。

### (特別公務員暴行陵虐)

**第百九十五条** 裁判、検察若しくは警察の職務を行う者又はこれらの職務を補助する者が、その職務を行うに当たり、被告人、被疑者その他の者に対して暴行又は陵辱若しくは加虐の行為をしたときは、七年以下の懲役又は禁錮に処する。

2 法令により拘禁された者を看守し又は護送する者がその拘禁された者に対して暴行又は陵辱若しくは加虐の行為をしたときも、前項と同様とする。

### (特別公務員職権濫用等致死傷)

**第百九十六条** 前二条の罪を犯し、よって人を死傷させた者は、傷害の罪と比較して、重い刑により処断する。

**(収賄、受託収賄及び事前収賄)**

**第百九十七条** 公務員が、その職務に関し、賄賂を收受し、又はその要求若しくは約束をしたときは、五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請託を受けたときは、七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2 公務員になろうとする者が、その担当すべき職務に関し、請託を受けて、賄賂を收受し、又はその要求若しくは約束をしたときは、公務員となった場合において、五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第三者供賄)**

**第百九十七条の二** 公務員が、その職務に関し、請託を受けて、第三者に賄賂を供与させ、又はその供与の要求若しくは約束をしたときは、五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加重収賄及び事後収賄)**

**第百九十七条の三** 公務員が前二条の罪を犯し、よって不正な行為をし、又は相当の行為をしなかったときは、一年以上の有期懲役に処する。

2 公務員が、その職務上不正な行為をしたこと又は相当の行為をしなかったことに関し、賄賂を收受し、若しくはその要求若しくは約束をし、又は第三者にこれを供与させ、若しくはその供与の要求若しくは約束をしたときも、前項と同様とする。

3 公務員であった者が、その在職中に請託を受けて職務上不正な行為をしたこと又は相当の行為をしなかったことに関し、賄賂を收受し、又はその要求若しくは約束をしたときは、五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あっせん収賄)

**第百九十七条の四** 公務員が請託を受け、他の公務員に職務上不正な行為をさせるように、又は相当の行為をさせないようにあっせんをすること又はしたことの報酬として、賄賂を収受し、又はその要求若しくは約束をしたときは、五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没収及び追徴)

**第百九十七条の五** 犯人又は情を知った第三者が収受した賄賂は、没収する。その全部又は一部を没収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その価額を追徴する。

(贈賄)

**第百九十八条** 第百九十七条から第百九十七条の四までに規定する賄賂を供与し、又はその申込み若しくは約束をした者は、三年以下の懲役又は二百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第二十六章 殺人の罪

(殺人)

**第百九十九条** 人を殺した者は、死刑又は無期若しくは五年以上の懲役に処する。

**第二百条** 削除

(予備)

**第二百一条** 第百九十九条の罪を犯す目的で、その予備をし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ただし、情状により、その刑を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

(自殺関与及び同意殺人)

**第二百二条** 人を教唆し若しくは幫助して自殺させ、又は人をその囑託を受け若しくはその承諾を得て殺した者は、六月以上七年以下の懲役又は禁錮に処する。

(未遂罪)

**第二百三条** 第百九十九条及び前条の罪の未遂は、罰する。

## 第二十七章 傷害の罪

(傷害)

**第二百四条** 人の身体を傷害した者は、十五年以下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傷害致死)

**第二百五条** 身体を傷害し、よって人を死亡させた者は、三年以上の有期懲役に処する。

**(現場助勢)**

**第二百六条** 前二条の犯罪が行われるに当たり、現場において勢いを助けた者は、自ら人を傷害しなくても、一年以下の懲役又は十万円以下の罰金若しくは科料に処する。

**(同時傷害の特例)**

**第二百七条** 二人以上で暴行を加えて人を傷害した場合において、それぞれの暴行による傷害の軽重を知ることができず、又はその傷害を生じさせた者を知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共同して実行した者でなくても、共犯の例による。

**(暴行)**

**第二百八条** 暴行を加えた者が人を傷害するに至らなかったときは、二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又は拘留若しくは科料に処する。

**(危険運転致死傷)**

**第二百八条の二** アルコール又は薬物の影響により正常な運転が困難な状態で自動車を走行させ、よって、人を負傷させた者は十五年以下の懲役に処し、人を死亡させた者は一年以上の有期懲役に処する。その進行を制御することが困難な高速度で、又はその進行を制御する技能を有しないで自動車を走行させ、よって人を死傷させた者も、同様とする。

2 人又は車の通行を妨害する目的で、走行中の自動車の直前に進入し、その他通行中の人又は車に著しく接近し、かつ、重大な交通の危険を生

じさせる速度で自動車を運転し、よって人を死傷させ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赤色信号又はこれに相当する信号を殊更に無視し、かつ、重大な交通の危険を生じさせる速度で自動車を運転し、よって人を死傷させた者も、同様とする。

### (凶器準備集合及び結集)

**第二百八条の三** 二人以上の者が他人の生命、身体又は財産に対し共同して害を加える目的で集合した場合において、凶器を準備して又はその準備があることを知って集合し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又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凶器を準備して又はその準備があることを知って人を集合させた者は、三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 第二十八章 過失傷害の罪

### (過失傷害)

**第二百九条** 過失により人を傷害した者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又は科料に処する。

2 前項の罪は、告訴がなければ公訴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ない。

### (過失致死)

**第二百十条** 過失により人を死亡させた者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業務上過失致死傷等)**

**第二百十一条** 業務上必要な注意を怠り、よって人を死傷させた者は、五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禁錮又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重大な過失により人を死傷させた者も、同様とする。

2 自動車の運転上必要な注意を怠り、よって人を死傷させた者は、七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禁錮又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ただし、その傷害が軽いときは、情状により、その刑を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十九章 墮胎の罪**

**(墮胎)**

**第二百十二条** 妊娠中の女子が薬物を用い、又はその他の方法により、墮胎したときは、一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同意墮胎及び同致死傷)**

**第二百十三条** 女子の囑託を受け、又はその承諾を得て墮胎させ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よって女子を死傷させた者は、三月以上五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業務上墮胎及び同致死傷)**

**第二百十四条** 医師、助産師、薬剤師又は医薬品販売業者が女子の囑託を受け、又はその承諾を得て墮胎させたときは、三月以上五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よって女子を死傷させたときは、六月以上七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不同意墮胎)

**第二百十五条** 女子の囑託を受けないで、又はその承諾を得ないで墮胎させた者は、六月以上七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2 前項の罪の未遂は、罰する。

(不同意墮胎致死傷)

**第二百十六条** 前条の罪を犯し、よって女子を死傷させた者は、傷害の罪と比較して、重い刑により処断する。

## 第三十章 遺棄の罪

(遺棄)

**第二百十七条** 老年、幼年、身体障害又は疾病のために扶助を必要とする者を遺棄した者は、一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保護責任者遺棄等)

**第二百十八条** 老年者、幼年者、身体障害者又は病者を保護する責任のある者がこれらの者を遺棄し、又はその生存に必要な保護をしなかったときは、三月以上五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遺棄等致死傷)

**第二百十九条** 前二条の罪を犯し、よって人を死傷させた者は、傷害の罪と比較して、重い刑により処断する。

## 第三十一章 逮捕及び監禁の罪

### (逮捕及び監禁)

**第二百二十条** 不法に人を逮捕し、又は監禁した者は、三月以上七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 (逮捕等致死傷)

**第二百二十一条** 前条の罪を犯し、よって人を死傷させた者は、傷害の罪と比較して、重い刑により処断する。

## 第三十二章 脅迫の罪

### (脅迫)

**第二百二十二条** 生命、身体、自由、名誉又は財産に対し害を加える旨を告知して人を脅迫し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又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2 親族の生命、身体、自由、名誉又は財産に対し害を加える旨を告知して人を脅迫し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

### (強要)

**第二百二十三条** 生命、身体、自由、名誉若しくは財産に対し害を加える旨を告知して脅迫し、又は暴行を用いて、人に義務のないことを行わせ、又は権利の行使を妨害した者は、三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2 親族の生命、身体、自由、名誉又は財産に対し害を加える旨を告知して脅迫し、人に義務のないことを行わせ、又は権利の行使を妨害し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

3 前二項の罪の未遂は、罰する。

### 第三十三章 略取、誘拐及び人身売買の罪

#### (未成年者略取及び誘拐)

**第二百二十四条** 未成年者を略取し、又は誘拐した者は、三月以上七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 (営利目的等略取及び誘拐)

**第二百二十五条** 営利、わいせつ、結婚又は生命若しくは身体に対する加害の目的で、人を略取し、又は誘拐した者は、一年以上十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 (身の代金目的略取等)

**第二百二十五条の二** 近親者その他略取され又は誘拐された者の安否を憂慮する者の憂慮に乗じてその財物を交付させる目的で、人を略取し、又は誘拐した者は、無期又は三年以上の懲役に処する。

2 人を略取し又は誘拐した者が近親者その他略取され又は誘拐された者の安否を憂慮する者の憂慮に乗じて、その財物を交付させ、又はこれを要求する行為をしたときも、前項と同様とする。

**(所在国外移送目的略取及び誘拐)**

**第二百二十六条** 所在国外に移送する目的で、人を略取し、又は誘拐した者は、二年以上の有期懲役に処する。

**(人身売買)**

**第二百二十六条の二** 人を買収した者は、三月以上五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2 未成年者を買収した者は、三月以上七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3 営利、わいせつ、結婚又は生命若しくは身体に対する加害の目的で、人を買収した者は、一年以上十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4 人を売り渡し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

5 所在国外に移送する目的で、人を売買した者は、二年以上の有期懲役に処する。

**(被略取者等所在国外移送)**

**第二百二十六条の三** 略取され、誘拐され、又は売買された者を所在国外に移送した者は、二年以上の有期懲役に処する。

**(被略取者引渡し等)**

**第二百二十七条** 第二百二十四条、第二百二十五条又は前三条の罪を犯した者を幫助する目的で、略取され、誘拐され、又は売買された者を引き渡し、収受し、輸送し、蔵匿し、又は隠避させた者は、三月以上五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2 第二百二十五条の二第一項の罪を犯した者を幫助する目的で、略取され又は誘拐された者を引き渡し、收受し、輸送し、蔵匿し、又は隠避させた者は、一年以上十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3 營利、わいせつ又は生命若しくは身体に対する加害の目的で、略取され、誘拐され、又は売買された者を引き渡し、收受し、輸送し、又は蔵匿した者は、六月以上七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4 第二百二十五条の二第一項の目的で、略取され又は誘拐された者を收受した者は、二年以上の有期懲役に処する。略取され又は誘拐された者を收受した者が近親者その他略取され又は誘拐された者の安否を憂慮する者の憂慮に乗じて、その財物を交付させ、又はこれを要求する行為を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 (未遂罪)

**第二百二十八条** 第二百二十四条、第二百二十五条、第二百二十五条の二第一項、第二百二十六条から第二百二十六条の三まで並びに前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及び第四項前段の罪の未遂は、罰する。

### (解放による刑の減輕)

**第二百二十八条の二** 第二百二十五条の二又は第二百二十七条第二項若しくは第四項の罪を犯した者が、公訴が提起される前に、略取され又は誘拐された者を安全な場所に解放したときは、その刑を減輕する。

**(身の代金目的略取等予備)**

**第二百二十八条の三** 第二百二十五条の二第一項の罪を犯す目的で、その予備をし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ただし、実行に着手する前に自首した者は、その刑を減輕し、又は免除する。

**(親告罪)**

**第二百二十九条** 第二百二十四条の罪、第二百二十五条の罪及びこれらの罪を幫助する目的で犯した第二百二十七条第一項の罪並びに同条第三項の罪並びにこれらの罪の未遂罪は、營利又は生命若しくは身体に対する加害の目的による場合を除き、告訴がなければ公訴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略取され、誘拐され、又は売買された者が犯人と婚姻をしたときは、婚姻の無効又は取消しの裁判が確定した後でなければ、告訴の効力がない。

## **第三十四章 名誉に対する罪**

**(名誉毀損)**

**第二百三十条** 公然と事実を摘示し、人の名誉を毀損した者は、その事実の有無にかかわらず、三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禁錮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2 死者の名誉を毀損した者は、虚偽の事実を摘示することによってした場合でなければ、罰しない。

(公共の利害に関する場合の特例)

**第二百三十条の二** 前条第一項の行為が公共の利害に関する事実に係り、かつ、その目的が専ら公益を図ることにあったと認める場合には、事実の真否を判断し、真実であることの証明があったときは、これを罰しない。

2 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公訴が提起されるに至っていない人の犯罪行為に関する事実は、公共の利害に関する事実とみなす。

3 前条第一項の行為が公務員又は公選による公務員の候補者に関する事実に係る場合には、事実の真否を判断し、真実であることの証明があったときは、これを罰しない。

(侮辱)

**第二百三十一条** 事実を摘示しなくても、公然と人を侮辱した者は、拘留又は科料に処する。

(親告罪)

**第二百三十二条** この章の罪は、告訴がなければ公訴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告訴をすることができる者が天皇、皇后、太皇太后、皇太后又は皇嗣であるときは内閣総理大臣が、外国の君主又は大統領であるときはその国の代表者がそれぞれ代わって告訴を行う。

## 第三十五章 信用及び業務に対する罪

### (信用毀損及び業務妨害)

**第二百三十三条** 虚偽の風説を流布し、又は偽計を用いて、人の信用を毀損し、又はその業務を妨害した者は、三年以下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威力業務妨害)

**第二百三十四条** 威力を用いて人の業務を妨害した者も、前条の例による。

### (電子計算機損壊等業務妨害)

**第二百三十四条の二** 人の業務に使用する電子計算機若しくはその用に供する電磁的記録を損壊し、若しくは人の業務に使用する電子計算機に虚偽の情報若しくは不正な指令を与え、又はその他の方法により、電子計算機に使用目的に沿うべき動作をさせず、又は使用目的に反する動作をさせて、人の業務を妨害した者は、五年以下の懲役又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第三十六章 窃盗及び強盗の罪

### (窃盗)

**第二百三十五条** 他人の財物を窃取した者は、窃盗の罪とし、十年以下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不動産侵奪)**

**第二百三十五条の二** 他人の不動産を侵奪した者は、十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強盜)**

**第二百三十六條** 暴行又は脅迫を用いて他人の財物を強取した者は、強盜の罪とし、五年以上の有期懲役に処する。

2 前項の方法により、財産上不法の利益を得、又は他人にこれを得させた者も、同項と同様とする。

**(強盜予備)**

**第二百三十七條** 強盜の罪を犯す目的で、その予備をし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事後強盜)**

**第二百三十八條** 窃盜が、財物を得てこれを取り返されることを防ぎ、逮捕を免れ、又は罪跡を隠滅するために、暴行又は脅迫をしたときは、強盜として論ずる。

**(昏醉強盜)**

**第二百三十九條** 人を昏醉させてその財物を盜取した者は、強盜として論ずる。

**(強盜致死傷)**

**第二百四十条** 強盜が、人を負傷させたときは無期又は六年以上の懲役に処し、死亡させたときは死刑又は無期懲役に処する。

**(強盜強姦及び同致死)**

**第二百四十一条** 強盜が女子を強姦したときは、無期又は七年以上の懲役に処する。よって女子を死亡させたときは、死刑又は無期懲役に処する。

**(他人の占有等に係る自己の財物)**

**第二百四十二条** 自己の財物であっても、他人が占有し、又は公務所の命令により他人が看守するものであるときは、この章の罪については、他人の財物とみなす。

**(未遂罪)**

**第二百四十三条** 第二百三十五条から第二百三十六条まで及び第二百三十八条から第二百四十一条までの罪の未遂は、罰する。

**(親族間の犯罪に関する特例)**

**第二百四十四条** 配偶者、直系血族又は同居の親族との間で第二百三十五条の罪、第二百三十五条の二の罪又はこれらの罪の未遂罪を犯した者は、その刑を免除する。

2 前項に規定する親族以外の親族との間で犯した同項に規定する罪は、告訴がなければ公訴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ない。

3 前二項の規定は、親族でない共犯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電気)

**第二百四十五条** この章の罪については、電気は、財物とみなす。

**第三十七章 詐欺及び恐喝の罪**

(詐欺)

**第二百四十六条** 人を欺いて財物を交付させた者は、十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2 前項の方法により、財産上不法の利益を得、又は他人にこれを得させた者も、同項と同様とする。

(電子計算機使用詐欺)

**第二百四十六条の二** 前条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人の事務処理に使用する電子計算機に虚偽の情報若しくは不正な指令を与えて財産権の得喪若しくは変更に係る不実の電磁的記録を作り、又は財産権の得喪若しくは変更に係る虚偽の電磁的記録を人の事務処理の用に供して、財産上不法の利益を得、又は他人にこれを得させた者は、十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背任)

**第二百四十七条** 他人のためにその事務を処理する者が、自己若しくは第三者の利益を図り又は本人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その任務に背く行為をし、本人に財産上の損害を加えたときは、五年以下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準詐欺)

**第二百四十八条** 未成年者の知慮浅薄又は人の心神耗弱に乗じて、その財物を交付させ、又は財産上不法の利益を得、若しくは他人にこれを得させた者は、十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恐喝)

**第二百四十九条** 人を恐喝して財物を交付させた者は、十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2 前項の方法により、財産上不法の利益を得、又は他人にこれを得させた者も、同項と同様とする。

(未遂罪)

**第二百五十条** この章の罪の未遂は、罰する。

(準用)

**第二百五十一条** 第二百四十二条、第二百四十四条及び第二百四十五条の規定は、この章の罪について準用する。

## 第三十八章 横領の罪

(横領)

**第二百五十二条** 自己の占有する他人の物を横領した者は、五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2 自己の物であっても、公務所から保管を命ぜられた場合において、これを横領した者も、前項と同様とする。

**(業務上横領)**

**第二百五十三条** 業務上自己の占有する他人の物を横領した者は、十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遺失物等横領)**

**第二百五十四条** 遺失物、漂流物その他占有を離れた他人の物を横領した者は、一年以下の懲役又は十万円以下の罰金若しくは科料に処する。

**(準用)**

**第二百五十五条** 第二百四十四条の規定は、この章の罪について準用する。

## **第三十九章 盗品等に関する罪**

**(盗品譲受け等)**

**第二百五十六条** 盗品その他財産に対する罪に当たる行為によって領得された物を無償で譲り受けた者は、三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2 前項に規定する物を運搬し、保管し、若しくは有償で譲り受け、又はその有償の処分のあつせんをした者は、十年以下の懲役及び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親族等の間の犯罪に関する特例)**

**第二百五十七条** 配偶者との間又は直系血族、同居の親族若しくはこれらの者の配偶者との間で前条の罪を犯した者は、その刑を免除する。

2 前項の規定は、親族でない共犯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 第四十章 毀棄及び隠匿の罪

### (公用文書等毀棄)

**第二百五十八条** 公務所の用に供する文書又は電磁的記録を毀棄した者は、三月以上七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 (私用文書等毀棄)

**第二百五十九条** 権利又は義務に関する他人の文書又は電磁的記録を毀棄した者は、五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 (建造物等損壊及び同致死傷)

**第二百六十条** 他人の建造物又は艦船を損壊した者は、五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よって人を死傷させた者は、傷害の罪と比較して、重い刑により処断する。

### (器物損壊等)

**第二百六十一条** 前三条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他人の物を損壊し、又は傷害した者は、三年以下の懲役又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若しくは科料に処する。

### (自己の物の損壊等)

**第二百六十二条** 自己の物であっても、差押えを受け、物権を負担し、又は賃貸したものを損壊し、又は傷害したときは、前三条の例による。

(境界損壊)

**第二百六十二条の二** 境界標を損壊し、移動し、若しくは除去し、又はその他の方法により、土地の境界を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した者は、五年以下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信書隠匿)

**第二百六十三条** 他人の信書を隠匿した者は、六月以下の懲役若しくは禁錮又は十万円以下の罰金若しくは科料に処する。

(親告罪)

**第二百六十四条** 第二百五十九条、第二百六十一条及び前条の罪は、告訴がなければ公訴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ない。

附 則 (昭和一六年三月一二日法律第六一号)

本法施行ノ期日ハ勅令ヲ以テ之ヲ定ム

附 則 (昭和二二年一〇月二六日法律第一二四号)

- 1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これを施行する。
- 2 第二十六条第二項の改正規定は、刑の執行猶予の言渡を受けた者がこの法律施行前に更に罪を犯した場合については、これを適用しない。
- 3 第三十四条ノ二の改正規定は、この法律施行前に刑の言渡又は刑の

免除の言渡を受けた者にもこれを適用する。

- 4 この法律施行前の行為については、刑法第五十五条、第二百八条第二項、第二百十一条後段、第二百四十四条及び第二百五十七条の改正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附 則**（昭和二八年八月一〇日法律第一九五号） 抄

- 1 この法律の施行期日は、昭和二八年十二月三十一日までの間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

**附 則**（昭和二九年四月一日法律第五七号） 抄

- 1 この法律は、昭和二九年八月三十一日までの間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但し、刑法第一条第二項の改正規定及び附則第三項の規定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 2 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刑法第二十五条ノ二第一項前段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犯された罪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但し、その罪とこの法律の施行後に犯された罪とにつき、刑法第四十七条又は第四十八条第二項の規定を適用して処断すべき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附 則**（昭和三十三年四月三〇日法律第一〇七号）

- 1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 2 この法律の施行前の行為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 3 罰金等臨時措置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二百五十一号) 第三条第一項の

規定は、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刑法第百五条ノ二、第百九十八条第二項及び第二百八条ノ二第一項の罪につき定めた罰金についても、適用されるものとする。

附 則 (昭和三五年五月一六日法律第八三号)

- 1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 2 罰金等臨時措置法(昭和三十二年法律第二百五十一号) 第三条第一項の規定は、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刑法第二百六十二条ノ二の罪につき定めた罰金についても、適用されるものとする。

附 則 (昭和三九年六月三〇日法律第一二四号)

- 1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 2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については、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刑法第二百二十八条ノ二及び第二百二十九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附 則 (昭和四三年五月二一日法律第六一号)

- 1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 2 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刑法第四十五条の規定は、数罪中のある罪につき罰金以下の刑に処し、又は刑を免除する裁判がこの法律の施行前に確定した場合における当該数罪についても、適用する。ただし、当該数罪のすべてがこの法律の施行前に犯されたものであり、かつ、改正後の同条の

規定を適用することが改正前の同条の規定を適用するよりも犯人に不利益となるときは、当該数罪については、改正前の同条の規定を適用する。

3 前項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確定した裁判の執行につき従前の例によることを妨げるものではない。

### 附 則（昭和五五年四月三〇日法律第三〇号）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 附 則（昭和六二年六月二日法律第五二号） 抄

#### （施行期日）

1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第一条中刑法第四条の次に一条を加える改正規定、第二条及び第三条の規定並びに次項の規定及び附則第四項中新東京国際空港の安全確保に関する緊急措置法(昭和五十三年法律第四十二号) 第二条第一項第十一号の改正規定は、国際的に保護される者(外交官を含む。) に対する犯罪の防止及び処罰に関する条約又は人質をとる行為に関する国際条約が日本国について効力を生ずる日から施行する。

#### （経過措置）

2 改正後の刑法第四条ノ二の規定並びに人質による強要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第五条及び暴力行為等処罰に関する法律第一条ノ二第三項の規定(刑法第四条ノ二に係る部分に限る。) は、前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規定

の施行の日以後に日本国について効力を生ずる条約並びに戦地にある軍隊の傷者及び病者の状態の改善に関する千九百四十九年八月十二日のジュネーヴ条約、海上にある軍隊の傷者、病者及び難船者の状態の改善に関する千九百四十九年八月十二日のジュネーヴ条約、捕虜の待遇に関する千九百四十九年八月十二日のジュネーヴ条約及び戦時における文民の保護に関する千九百四十九年八月十二日のジュネーヴ条約により日本国外において犯したときであつても罰すべきものとされる罪に限り適用する。

#### (罰金等臨時措置法の適用)

3 罰金等臨時措置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二百五十一号) 第三条第一項の規定は、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刑法第百六十一条ノ二及び第二百三十四条ノ二の罪につき定めた罰金についても、適用されるものとする。

### 附 則 (平成三年四月一七日法律第三一号) 抄

#### (施行期日)

1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 (条例の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

2 条例の罰則で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効力を有するものについては、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刑法第十五条及び第十七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この法律の施行の日から一年を経過するまで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その期限前にした行為に対してこれらの罰則を適用する場合には、その期限の経過後においても、同様とする。

**(罰金の執行猶予の限度に関する経過措置)**

3 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刑法第二十五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についても、適用する。

**附 則**（平成七年五月一二日法律第九一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経過措置)**

**第二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の処罰並びに施行前に確定した裁判の効力及びその執行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ただし、この法律による改正前の刑法第二百条、第二百五条第二項、第二百十八条第二項及び第二百二十条第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併合罪として処断すべき罪にこの法律の施行前に犯したものと施行後に犯したものとがあるときは、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刑法(以下この条において「新法」という。)第十条、第十四条、第四十五条から第五十条まで及び第五十三条の規定を適用し、一個の行為が二個以上の罪名に触れる場合又は犯罪の手段若しくは結果である行為が他の罪名に触れる場合において、これらの罪名に触れる行為にこの法律の施行前のものと施行後のものとがあるときは、新法第十条及び第五十四条(同条第二項において適用する第四十九条第二項を含む。)の規定を適用する。

3 前項の規定により同項に規定する新法の規定を適用した後の刑の加重減輕、刑の執行の猶予その他の主刑の適用に関する処理については、新法の規定を適用する。

附 則 (平成一三年七月四日法律第九七号) 抄

(施行期日)

1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附 則 (平成一三年一二月五日法律第一三八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経過措置)

第二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の処罰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附 則 (平成一三年一二月一二日法律第一五三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処分、手続等に関する経過措置)**

**第四十二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改正前のそれぞれの法律(これに基づく命令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ってした処分、手続その他の行為であって、改正後のそれぞれの法律の規定に相当の規定があるものは、この附則に別段の定めがあるものを除き、改正後のそれぞれの法律の相当の規定によってしたものとみなす。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

**第四十三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及びこの附則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場合におけるこの法律の施行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経過措置の政令への委任)**

**第四十四条** この附則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必要な経過措置は、政令で定める。

附 則 (平成一五年七月一八日法律第一二二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経過措置)**

**第二条** 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刑法第三条の二の規定並びに附則第三条

による改正後の暴力行為等処罰に関する法律(大正十五年法律第六十号) 第一条ノ二第三項及び附則第四条による改正後の人質による強要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昭和五十三年法律第四十八号) 第五条の規定(刑法第三条の二に係る部分に限る。) 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附 則 (平成一五年八月一日法律第一三八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九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附 則 (平成一六年六月一八日法律第一一五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第一追加議定書が日本国について効力を生ずる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附則第三条の規定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附 則 (平成一六年一二月八日法律第一五六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三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第三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第一条の規定による改正前の刑法(以下「旧法」という。) 第二百四十条の罪に当たる行為の処罰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2 この法律の施行前に犯した罪の公訴時効の期間については、第二条の規定による改正後の刑事訴訟法第二百五十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四条** 併合罪として処断すべき罪にこの法律の施行前に犯したものと施行後に犯したものがある場合において、これらの罪について刑法第四十七条の規定により併合罪として有期の懲役又は禁錮の加重をするときは、旧法第十四条の規定を適用する。ただし、これらの罪のうちこの法律の施行後に犯したもののみについて第一条の規定による改正後の刑法第十四条の規定を適用して処断することとした場合の刑が、これらの罪のすべてについて旧法第十四条の規定を適用して処断することとした場合の刑より重い刑となるときは、その重い刑をもって処断する。

**附 則** (平成一七年五月二五日法律第五〇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一年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検討)

**第四十一条** 政府は、施行日から五年以内に、この法律の施行の状況につ

いて検討を加え、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結果に基づいて所要の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附 則 (平成一七年六月二二日法律第六六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調整規定)

**第二条** この法律の施行の日が犯罪の国際化及び組織化並びに情報処理の高度化に対処するための刑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の日前である場合には、第一条のうち刑法第三条第十二号及び第三条の二第五号の改正規定中「第三条第十二号」とあるのは「第三条第十一号」とし、第四条のうち組織的犯罪処罰法第三条第一項第八号の改正規定中「第三条第一項第八号」とあるのは「第三条第一項第四号」とする。

**第三条** この法律の施行の日が犯罪の国際化及び組織化並びに情報処理の高度化に対処するための刑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の日前である場合には、同法の施行の日の前日までの間における組織的犯罪処罰法別表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表第二号ワ中「国外移送目的略取等、被略取者収受等」とあるのは、「所在国外移送目的略取及び誘拐、人身売買、被略取者等所在国外移送、被略取者引渡し等」とする。

**第四条** この法律の施行の日が旅券法及び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第一条中旅券法第二十三条の改正規定の施行の日前である場合には、当該改正規定の施行の日の前日までの間における第三条の規定による改正後の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二十四条第四号ニ及びヨ並びに第二十四条の二第二号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法第二十四条第四号ニ中「旅券法(昭和二十六年法律第二百六十七号) 第二十三条第一項(第六号を除く。) から第三項までの罪により刑に処せられた者」とあるのは「削除」とし、同号ヨ中「イからカまで」とあるのは「イからハまで及びホからカまで」とし、同法第二十四条の二第二号中「第四号ハ」とあるのは「第四号ハ及びホ」とする。

2 附則第一条第三号に掲げる規定の施行の日が旅券法及び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第一条中旅券法第二十三条の改正規定の施行の日前である場合には、当該改正規定の施行の日の前日までの間における第三条の規定による改正後の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六十一条の二の二第一項第三号及び第六十一条の二の四第一項第五号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これらの規定中「第四号ハ」とあるのは、「第四号ハ及びホ」とする。

**第五条** 附則第一条第四号に掲げる規定の施行の日が旅券法及び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第二条の規定の施行の日前である場合には、第四条のうち、組織的犯罪処罰法第二条第二項第一号イの改正規定中「別表第一第一号、第二号若しくは第四号から第六号まで」を「別表第一(第三号を除く。)」とあるの

は「、第四号若しくは第五号」を「若しくは第四号から第九号まで」とし、組織的犯罪処罰法別表第一第四号ニ中「ト」を「ル」に改め、同号ト中「ヘ」を「ヌ」に改め、同号中トをルとし、ヘをヌとし、ホをへとし、への次にト、チ及びリを加える改正規定中「別表第一第四号ニ中「ト」を「ル」に改め、同号ト中「ヘ」を「ヌ」に改め、同号中トをルとし、」とあるのは「別表第一第四号ニ中「ヘ」を「ヌ」に改め、同号へ中「ホ」を「リ」に改め、同号中」とし、組織的犯罪処罰法別表第一中第六号を第十号とし、第五号を第六号とし、同号の次に三号を加える改正規定中「第六号を第十号とし、第五号」とあるのは「第五号」とする。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旅券法及び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第二条のうち、組織的犯罪処罰法第二条第二項第一号イの改正規定中「、第四号若しくは第五号」を「若しくは第四号から第六号まで」とあるのは「別表第一第一号、第二号若しくは第四号から第九号まで」を「別表第一(第三号を除く。)」とし、組織的犯罪処罰法別表第一第四号ニ中「ヘ」を「ト」に改め、同号へ中「ホ」を「ヘ」に改め、同号中へをトとし、ホの次にへを加える改正規定中「別表第一第四号ニ中「ヘ」を「ト」に改め、同号へ中「ホ」を「ヘ」に改め、同号中へをトとし、ホ」とあるのは「別表第一第四号ニ中「ヌ」を「ル」に改め、同号ヌ中「リ」を「ヌ」に改め、同号中ヌをルとし、リ」とし、「へ 旅券法」とあるのは「ヌ 旅券法」とし、組織的犯罪処罰法別表第一に一号を加える改正規定中「六 旅券法」とあるのは「十 旅券法」とする。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

第十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附 則 (平成一八年五月八日法律第三六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経過措置)

第二条 次に掲げる罰金又は科料の執行(労役場留置の執行を含む。)については、第一条の規定による改正後の刑法第十八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 一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について科せられた罰金又は科料
- 二 刑法第四十八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併合罪として処断された罪にこの法律の施行前に犯したものと施行後に犯したものがある場合において、これらの罪に当たる行為について科せられた罰金

附 則 (平成一九年五月二三日法律第五四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経過措置)

**第二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の処罰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大正十五年四月十日法律第六十号)

最終改正：平成一六年一二月八日法律第一五六号

### (集団的暴行、脅迫、損壊)

**第一条** 団体若ハ多衆ノ威力ヲ示シ、団体若ハ多衆ヲ仮装シテ威力ヲ示シ又ハ兇器ヲ示シ若ハ数人共同シテ刑法（明治四十年法律第四十五号）第二百八条、第二百二十二条又ハ第二百六十一条ノ罪ヲ犯シタル者ハ三年以下ノ懲役又ハ三十万円以下ノ罰金ニ処ス

### (加重傷害)

**第一条ノ二** 銃砲又ハ刀剣類ヲ用ヒテ人ノ身体ヲ傷害シタル者ハ一年以上十五年以下ノ懲役ニ処ス

2 前項ノ未遂罪ハ之ヲ罰ス

3 前二項ノ罪ハ刑法第三条、第三条の二及第四条の二ノ例ニ従フ

### (常習的な傷害、暴行、脅迫、損壊)

**第一条ノ三** 常習トシテ刑法第二百四条、第二百八条、第二百二十二条又ハ第二百六十一条ノ罪ヲ犯シタル者人ヲ傷害シタルモノナルトキハ一年以上十五年以下ノ懲役ニ処シ其ノ他ノ場合ニ在リテハ三月以上五年以下ノ懲役ニ処ス

(集团的、常習的な面会強請・強談・威迫)

**第二条** 財産上不正ノ利益ヲ得又ハ得シムル目的ヲ以テ第一条ノ方法ニ依リ面会ヲ強請シ又ハ強談威迫ノ行為ヲ為シタル者ハ一年以下ノ懲役又ハ十万円以下ノ罰金ニ処ス

2 常習トシテ故ナク面会ヲ強請シ又ハ強談威迫ノ行為ヲ為シタル者ノ罰亦前項ニ同シ

(集団犯罪等の請託)

**第三条** 第一条ノ方法ニ依リ刑法第百九十九条、第二百四条、第二百八条、第二百二十二条、第二百二十三条、第二百三十四条、第二百六十条又ハ第二百六十一条ノ罪ヲ犯サシムル目的ヲ以テ金品其ノ他ノ財産上ノ利益若ハ職務ヲ供与シ又ハ其ノ申込若ハ約束ヲ為シタル者及情ヲ知リテ供与ヲ受ケ又ハ其ノ要求若ハ約束ヲ為シタル者ハ六月以下ノ懲役又ハ十万円以下ノ罰金ニ処ス

2 第一条ノ方法ニ依リ刑法第九十五条ノ罪ヲ犯サシムル目的ヲ以テ前項ノ行為ヲ為シタル者ハ六月以下ノ懲役若ハ禁錮又ハ十万円以下ノ罰金ニ処ス

附 則

本法施行前刑法第二百八条第一項又ハ第二百六十一条ノ罪ヲ犯シタル者ニシテ本法ニ該当スルモノハ本法施行後ト雖告訴アルニ非サレハ其ノ罪ヲ論セス

附 則（昭和三九年六月二四日法律第一一四号）

（施行期日）

- 1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

- 2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附 則（昭和六二年六月二日法律第五二号） 抄

（施行期日）

- 1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第一条中刑法第四条の次に一条を加える改正規定、第二条及び第三条の規定並びに次項の規定及び附則第四項中新東京国際空港の安全確保に関する緊急措置法(昭和五十三年法律第四十二号) 第二条第一項第十一号の改正規定は、国際的に保護される者(外交官を含む。) に対する犯罪の防止及び処罰に関する条約又は人質をとる行為に関する国際条約が日本国について効力を生ずる日から施行する。

（経過措置）

- 2 改正後の刑法第四条ノ二の規定並びに人質による強要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第五条及び暴力行為等処罰に関する法律第一条ノ二第三項の規定(刑法第四条ノ二に係る部分に限る。) は、前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規定

の施行の日以後に日本国について効力を生ずる条約により日本国外において犯したときであつても罰すべきものとされる罪に限り適用する。

附 則 (平成三年四月一七日法律第三一号) 抄

(施行期日)

1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附 則 (平成七年五月一二日法律第九一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附 則 (平成一五年七月一八日法律第一二二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附 則 (平成一六年一二月八日法律第一五六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三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経過措置)

**第二条** この法律の施行の日が犯罪の国際化及び組織化並びに情報処理の高度化に対処するための刑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十六年法律第 号)の施行の日前である場合には、第三条のうち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第三条第一項第七号の改正規定中「第三条第一項第七号」とあるのは、「第三条第一項第三号」とする。

2 この法律の施行の日が犯罪の国際化及び組織化並びに情報処理の高度化に対処するための刑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第五条の規定の施行の日前である場合には、第四条のうち暴力行為等処罰に関する法律第一条ノ二第一項及び第一条ノ三第一項の改正規定中「第一条ノ三第一項」とあるのは、「第一条ノ三」とする。